

제418회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0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 장애인활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2)
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0)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8)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2)
3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3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41.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42.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4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4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4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4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6)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6)
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4)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7)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6)

-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9)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7)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1)  
 5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5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7)
- 

### 상정된 안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 5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 5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 5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 5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 5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 5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 5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 5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 5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 5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 5
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 5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 5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 5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 5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 5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 5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 5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 5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 5
2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 ..... 5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 5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 5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 5
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6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 6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 6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98) .....	6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92) .....	6
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50) .....	6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88) .....	6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	6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	6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2) .....	6
3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	6
3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	6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	6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	6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	6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	6
41.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	6
42.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	6
4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	6
4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	6
4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	6
4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	6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	6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	6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6) .....	6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6) .....	6
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	6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4) .....	6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7) .....	6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6) .....	7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9) .....	7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7)	7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1)	7
5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7
5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7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7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7)	7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김미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8)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2)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1)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6)
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7)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9)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0)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5)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3)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3)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5)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5)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5)
2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50)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1)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6)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6)

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9)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3)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2)
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0)
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88)
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0)
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8)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2)
3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3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7)
3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4)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1)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7)
41.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4)
42.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7)
4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1)
44.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0)
4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81)
4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1)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6)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6)
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6)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4)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7)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6)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9)
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7)
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1)
5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5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7)

(10시04분)

○소위원장 김미애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형동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후보물질 발굴 등을 위하여 국가 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백신개발센터는 2023년 10월에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그 선행 인프라로서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을 위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절차적으로 백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의 경우 상당 규모의 재정 지원이 동반된다 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추진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과정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적지 않은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최종 입법화되어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는 점검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하시는 경우 백신개발센터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등 형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차기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백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주신 부분도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종현 위원** 예, 있습니다.

차장님, 현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센터를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얼마나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지금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9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가 각 95억으로 해서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 예산 확보 내역은 작년이 10억, 올해가 22억 그다음에 25년 예산이 22억으로 해서 국비가 54억 현재까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도 현재까지 70억 반영이 돼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센터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또 유럽 등 주요 국가도 차기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두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예,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BRC라고 해서 생물의학연구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저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와 유사하게 조직을 구성한 것인데 여기에서 코로나 시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사와 협업을 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사례도 있고요. 가깝게는 일본에서 스카르다(SCARDA)라고 선진연구개발전략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센터 건립 주요 장애요인으로 백신 신기술 관련 낮은 기술성숙도와 발굴항원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템, 우수 인적자원의 지방 기피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저희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23년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원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의 규모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이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입지가 좀 나은 것이 국토부에서 지정한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되어 있고요 또 산업부에서 지정한 백신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인력들을 저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금 식약처 소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마다 백신 관련 기술개발 센터를 만드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 심사할 때 많이 얘기 나왔던 게 mRNA 백신 개발이나 ARPA-H 관련된 내용들 예산 엄청 증액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역할에 겹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mRNA 백신개발사업은 mRNA라는 백신 개발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그 플랫폼을 생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미래의 감염병이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지 감염병에 저희가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신 후보물질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원들을 발굴을 해서 항원 라이브러리로 보관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앞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지금 전남 화순에 지어지고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하고 이것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에 지금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하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가 도식화돼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백신 개발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백신 후보물질인 항원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라이브러리로 보관하고 민간에 분양해 주고 기술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주로 백신 개발 후기 쪽에 집중을 해서 백신의 인허가와 관련된 품질검사라든가 아니면 시험법의 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개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게 연결돼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센터로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질병관리청차장 임숙영** 백신 개발이 워낙에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화라는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유사점에 대해서 저희가 식약처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식약처하고 상의를 해서 각각을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현재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더 없으십니까?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제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19건입니다.

이번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달에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강선우 의원안과 김미애 의원안, 2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서 부식비와 인건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지난 소위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을 보시면 당시 소위에서는 정부 측의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상황을 본 후에 안건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된 바 있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개정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계속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기재부 국장이 와서 보조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1월 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냉난방 68억 정도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상황을 좀 보면서 그다음 단계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월 5일부터 시행됐다는 뜻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시행됐습니다. 10월 말에……

○소위원장 김미애 시행 중이라는 뜻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10월 말에 국무회의 통과를 해서 시행시기는 11월 5일입니다. 당초에는 경로당 냉난방비가 남아도 사실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에 보니까 대략 한 110억 정도가 돈이 남았었습니다. 그걸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아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하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별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원래 운영비는 주지를 못하는데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과 관련된 잔액에 대해서는 잔액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11월 5일 시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김남희 위원 지난 총선 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신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하셨듯이 집행잔액이 110억인데 경로당 숫자로 나눠 보면 1년에 15만 원 수준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1년에 15만 원으로 어르신들이 반찬 며칠 사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보니까 저희가 15만 원은 국비 기준이었었고요. 그것을 지방비까지 환산하니까 30만 원이 조금 넘는 3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31만 원으로 며칠 정도 부식비 지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장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장은 봅니다.

○김남희 위원 장 보면 얼마 정도 나오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는 5만 원 내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5만 원 내로 장 봐서 며칠이나 식사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쯤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많이 안 먹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미애 집에서 많이 안 드셔서 그래.

○김남희 위원 그런데 31만 원으로 어르신들 반찬값 하면 일주일 나올까요? 일주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이 주 5일 경로당 급식비 지원 이게 실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시행령 개정 광고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1년에 31만 원이라는 것 알고 쓰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여당 야당 의원들 지역에 가서 우리 주 5일 급식비 지원 실현 시켰다, 내년부터 급식비 지원 5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부족할 것 같기는 하고요.

○김남희 위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든 다 지역에 약속하신 내용이 있고 그러면…… 물론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 위원 이번에 냉난방비 68억 증액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68억 8000만 원입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차관님, 우리가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경로당을 지원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금액을 높여 갔는데, 처음에는 양곡만 지원하다가. 지원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 같은 건 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소병훈 위원** 이제는 그게 단순히 경로당의 노인들 급식이나 냉난방비나 부식 차원이 아니라 경로당이 노인들의 일종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시골 지역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경로당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모여 살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외로움이나 고독사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상태도 자연스럽게 점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지방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도 안 되고 특히 저는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따져서야 되겠나 싶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보면 아마, 그걸 제가 일일이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엄청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픈 것, 질병이 좀 뒤에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왕 제대로 하려면 단순히 그런 냉난방비나 급식비나 부식비 차원이 아니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야말로 노인복지법이니까, 예산이 예결위에 확정되기 전에 복지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복지부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사실은 경로당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음식도 드시지만 안전에도 또 이렇게, 활동도 하시는 것 해서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곳이 사실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식사를 한다라든지 또 저희가 원래는 지금 한 3.5일 정도 하고 있는 것을 5일 동안 하고 장기적으로는 7일 동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난번에 여러 말씀을 주셔 가지고 기재부 국장이 와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약속을 사실 지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이렇게 지금 돌린 것하고 예산 증액된 것하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지적을 하거나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문제는 먼저 선제적으로 노인 문제를 다룬다는 그런 차원에서 갔으면 저는 좋겠다. 굳이 왜 국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정부에서 합니까? 먼저 하면 더 좋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많은 내용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복지부에서 예컨대 여기에 노인 건강이 포함될 수 있다. 보건체조라도 할 수 있게 하

고, 밥이 맛있으면 더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어르신들 더 불러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생활이 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복지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번 일은 국회의 요청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저희도 지금 3.4일 하는 것을 5일 할 수 있도록 쌀도 4포를 더 줘서 12포를 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니까 지금 3.4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밥을 해 드셨지만 지금은 공익형 노인일자리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가 한 6만 8000명 정도를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또 같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차관님, 부식비 지원을 왜 당당하게 못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회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부식구입비, 취사연료비 지원 근거 마련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미뤘잖습니까? 오늘 통과시키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미애** 장종태 위원님.

**○장종태 위원**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실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에 경로당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제외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했던 부식비나 또 급식을 위한 어떤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건 어찌 보면 여야 공통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또 노인빈곤율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게 점심 한 끼 할 수 있는 확실한 예산 지원의 길을 분명하게 열어 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상태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시방편 쪽으로 쓰다 남은 거, 아낀 거 부식비 사는 데 좀 쓰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빈곤율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지금 남는 비용을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대개 집에 한 가구당 한 분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가시게 되면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집에 혼자 계시면 냉난방기도 계속 틀어야 되고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계시면 그걸 끄고 가면 또 에너지 절약도 되는 그런 부차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말 어르신들이 계속 거기 같이 모여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건강 체크도 되고 또 서로 대화도 하면서 건강 돌봄도 되는 것인데 국가 예산 전체에서 정말

급식비·부식비 지급하는 게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복지 지원이 됨으로써 국가에서 절약되는 예산도 상당히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조속히 시행 내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25년도에 노인복지법 개정이 됐…… 아, 2025년도에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꿨다고 하셨더라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2005년입니다.

○**한지아 위원** 그때 왜 바꿨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사무·지방사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마 경로당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지원은 지방에서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고 그때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 비율도 같이 내려보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할당하는 비용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전체 정리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경로당을 참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로당마다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첫 번째, 시설적인 면에서. 우리 지역도 최근에 신축된 멋진 건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한 사오십 년 된 노후주택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 거실 하나 있고 방은 한 3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열 분 넘는 할머니들이 계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앉아서 뭘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천장이 낮아 가지고. 그래서하시는 일이 누워 계시고 화투를 치신다든지 그나마 한번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찾아오면 그때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말 고맙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 두 번째, 어떤 면이 있느냐면 경로당마다 회원 수가 천차만별입니다. 10명 안 되는 곳, 30명 되는 곳, 그래도 지원은 똑같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액입니다. 지원은 똑같고 계다가 또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동네마다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입 회원들이 아예 가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 각 지역마다 경로당 이용이나 시설이나 여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올해 노인인구 수가 1000만이 넘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7월 10일 날 1062만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여든 넘으신 분도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가셔서 아예 경로당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지역에는

한 대여섯 개 주택가에 어르신들 한 분들이 계시는데 노인일자리 갔다 오시고 오후 되면 같이 어울려서 집집마다 다니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 이용 대상에 대비해서 이용률은 얼마인지 나머지 노인들은 어떻게 여가를 보내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게, 저는 복지부가 노인 복리 증진과 관련한 점검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방향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에서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제가, 질의 속에 많잖아요, 이미?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소위원장 김미애 회원 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을 하니까 어떤 곳은 남는 돈이 많아요, 양곡비 그리고 조그만 데는 냉난방비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절약이 몸에 배어서 제가 한여름에 가도 어떤 경우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줬다가 뺏기는 왜 뺏냐, 주지를 말지’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계속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은 그런 한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번거롭게 일일이 계산해서 정산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 남는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 하는 데도 20년 걸렸네요? 그러면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그만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키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언제입니까?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개정이 한 번 됐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16년에 한 번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 번 됐는데 지원 근거가 2012년 2월에 마련됐습니까, 노인복지법 상 냉난방비·양곡비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12년 2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런데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때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국고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가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다가 보조금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8년 11월 27일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래서 2019년부터 정부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내역 사업으로 편성됐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그로부터 지금 한 5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부에서 이 개정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타 부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희망만 드리고 장기간 또 계속 이걸 가지고 다른 말씀들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기재부에서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예,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번에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한 거랑 포함해서 과거에 왜 이렇게

더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이양사업이었습니다. 2005년도 분권교부세, 그때 균특회계도 만들고 지방이양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 관련해서 큰 폭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때 분권교부세라는 걸 만들면서 지방으로 이양을,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의 취지는 이렇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들에 대한 운영 지원은 지자체가 전담하는 게 맞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부터 해서 경로당이나 아동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당 부분이 넘어가면서 재원도 분권교부세라는 형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를 계속 해서 그때 지방 이양한 사업들은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게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제외 대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경로당에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요구도 많고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2008년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은 안 되고 예산은 반영되면서 부대의견 형태로 가서 처음에는 난방비만 한 번 했었다가 양곡비도 가고 그다음에 냉방비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보조금법 시행령 자체도 개정되면서 19년서부터는 전반에 반영해서 국고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문제 기본적으로는 거기 있지만 또 하나 이면에는 지방과 중앙이 어떻게 재원을 분담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또 큰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관련해서 지자체가 상당 부분 담당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고가 더 들어가는 경우에 어르신들한테 더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방비 부담만 조금 줄여 주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역할 분담, 재원 분담 이 문제도 함께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방의 역할이, 지방재정도 많이 어렵지만 국가재정도 많이 어려우니 저희가 지방과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을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난 예결소위 회의록을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답변이 제주도는 기관당 연간 1800만 원 지원하고 충남은 기관당 92만 원 지원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경로당의 급식 지원이 가지고 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주 5일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다 공약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심하면 최소한의 부식비 지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책무다,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이 저는 이를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정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별로 국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강선우 간사님.

○강선우 위원 오상우 국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굉장히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쭉 하신 말씀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복지 사업, 복지 예산에 관해서는 다 적용되는 예예요, 단지 이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복지 관련해 가지고 전달체계가 지자체로 많이 이관이 됐고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끌어다 쓰고 그럼 당연히 편차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지자체 재정자립도 열악한 데는 더 심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 국한시켜서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 관련된 전체 설계를 다 다시 해야 되고 그것에 기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제를 해 가지고 다 해야 되고 말씀 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게 주신 말씀이 지금 현재 이 법 관련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것과 전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함께 가면 된다, 통과시키고 예산 집행하고 그리고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그런 큰 그림, 청사진들은 청사진들대로 복지부에서 그려 나가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법안 저는 충분히 토론할 만큼 토론했고 그리고 심사에 쏟을 시간만큼, 그보다 더 쏟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챗바퀴 도는 식의 토론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견이 만약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 이것 표결합시다.

○소위원장 김미애 잠깐만요.

더 하실 말씀……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아까 기재부에서 오신 분께서 균특회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균특회계가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아시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지금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24년에 11조였거든요. 24년에 전체 예산 지출 얼마였습니까?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24년에 육백칠십……

○김선민 위원 퍼센트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그런데 이것은 균특회계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

○김선민 위원 그런데 아까 지방 균특회계 얘기를 하셨어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아니, 이것 분권교부세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균특은 다른……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때 분권교부세나 균특회계를, 그러니까 지방재정 관련해 큰 개편이 있었다는 차원이고요. 이 사업은 균특회계하고는 관계없고……

○김선민 위원 분권교부세는 얼마나 늘었어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지금 일 반교부세로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민 위원 그래서 늘었냐고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교부세는 당연히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아니, 전체 국가 지출 대비 그게 지금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2000만 원하고 삼십몇만 원하고 차이 나는 것을 지방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지방재정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2005년 대비 노인인구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사이에 인구소멸 문제가 엄청나게 사회의 문제로 돼서, 실제로 지금 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다 인구소멸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들인데 이 문제는 지방의,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데 거기에 적절한 지원이 가해지기 어렵고 단가를 맞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20년 만에 다시 생각해야 할 논의라는 점 그리고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올리셨다라는 것은.....

이게 시행령이잖아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81호는 시행령인데 거기 예외사항의 다시 예외사항이라는 것 그 문구에 매달려서 이 법안을 개정 안 한다라는 것은, 법을 결정하는 데 지금 당장 없어서 못 한다 하면 못 할 수도 있는데 기재부에서 와서 이렇게 이것을 못 한다라고 법을 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병훈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미애 위원** 하세요.

○**소병훈 위원** 제가 아까 복지부차관께는 뭔가 정부 부처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약하게 드린 건데 기재부 공무원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노인인구가 7%일 때. 그리고 2017년에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때는 14%일 때. 그런데 내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인구의 20%가 넘어갑니다. 1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인복지법 자체가 ‘복지’ 자를 빼야 된다. 그런데 노인 관련 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일정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에 대한 국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지방 이양 문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방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붙인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전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낸 법안보다,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도 선제적으로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인식을 하고 새로운 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서 자꾸 예산이니 비용이니 이런 얘기는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온 그런 생각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직접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위원**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저희 토론할 만큼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사할 만큼 했습니다. 표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만 입장 확인할게요.

기재부 오상우 국장님, 윤석열 정부 경로당 급식 확대 반대 입장이세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급식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시냐는……

○**강선우 위원** 확대 반대 입장이세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우 위원** 차관님, 반대 입장이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급식은 저희가 주 5일, 7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표결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미애** 표결은 그냥 할 수는 없고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 안이 다 달라요, 이 내용이. 그저 그냥 표결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부식구입비만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건비까지 있는 데도 있고 또 통합해서 운영비를 보조하자는 이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르고 전반적으로 또 관련 부처나 단체 의견을 봐도 각각 달라요.

행안부는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도 조금씩 다릅니다, 의견들이. 국회의원 의견, 안이 다양하듯이 각 지자체도 의견도 다양하고 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경로당 외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에도 그러면, 경로당 안 가지고 일부는 이런 데 가기 때문에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자 이런 의견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무슨 제 개인적인 반대가 아니고 저도 이것 안을 냈고 수차례 공감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 없이 이렇게 통과된다고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과거 정부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이번에 한 단계를 밟았잖아요,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더 보고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들 안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단계적으로 저는 밟아 가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떼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할지에 대해서 그런 심사를 최소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소병훈 위원** 그러면 언제, 22대 국회 끝나면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소위원장 김미애** 아니지요. 지금까지 그러면 국회가 몰아서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병훈 위원**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소위원장 김미애** 22대에 들어와서 한 해도 안 지났습니다. 한 해는……

○**소병훈 위원** 한 해가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늦어 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법안을. 그것을 또 지금 다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지난 정부도 안 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정부도 그러면, 다 선심성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김미애 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선심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들도 수정안을 하나 마련하시고 정부도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하나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래서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하는 것을 만약 위원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에서 끝까지 논의합시다. 대상 지금 협의합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도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여기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다른 것 먼저 진행합시다.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강선우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아니, 이것을 정리 못 하면 언제 해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런데 여러 위원님……

○**소병훈 위원** 오늘 안 끝나면, 이게 안 끝나면 뒤로 다 밀리는데……

○**소위원장 김미애** 아니, 위원님들 계셨겠지만 21대도 있었고 20대도 있었는데 그래도 22대 첫 번째 와서 하나는 거르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지,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김남희 위원** 국힘 위원님들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소위원장 김미애** 저도 지금 발의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책임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부 재원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원하는대로 다 해 달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이 계속 손 들었으니까 먼저 하시고……

○**김남희 위원** 저는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강선우 위원** 먼저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세요, 좀 이따 드릴 테니까.

○**김남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관계의 팩트체크가 필요한데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방교부세 얘기하셨잖아요. 교부세가 지금, 기재부에서 오셔서 더 잘 아실 텐데 작년에 세수 평크 56조, 올해 30조 세수 결손 일어났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6000억 원 삭감했고 올해도 교부세 2조 2000억 원 삭감한 것 맞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예.

○**김남희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에 뭔가 충분한 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은 팩트체크를 확실히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의견이 다양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똑같이 경로식당, 노인복지관에 대한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최소한이라도 여야 위원이 뭔가 성의를 보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양보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다 들어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식구입비예요. 부식구입비로 정리

를 해 가지고 이거라도 연말이 오기 전에 경로당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김선민 위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보니까 타 지방이 양사업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드셨더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쟁점사항이 지역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지방이 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역별로 상황이랑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에서 알아서 예산 편성을 하라라는 의미였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지역마다 편차가 제주도는 1800억인가요, 그리고 충남은 92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기에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지역마다 필요한데 못 받는 건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요.

만약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것 정리가 국장님 말씀처럼 되면서 사실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지급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밥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해 가지고 이것도 한 105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그때 부식비는 지방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보니까 한 861억 정도를 지방에서 나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디는 1800을 주기도 하고 어디는 지방에서 얼마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고민은 그겁니다. 뭐냐하면 사실 큰 통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잔액 남은 것 110억이라든지 또 68억을 줘 가지고 이렇게 돈을 더 주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방에 나중에 혹시라도 됐을 때, 지금은 지방에서 주는 861억 원 그대로 주면서 또 다시 이 돈을 얹어 주고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중에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돈은 어른신들이, 지금보다도 더 부식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돈이 늘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밑의 돈이 빠지면 또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고민이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가 정부 내에서 일을 하면서 지난 번에 와서 10월 달까지는 법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10월 말까지 분명히 통과해서 11월 5일 날 시행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지금 바로, 그다음 번 3개월도 안 된 그런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법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 간의 신뢰도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은 좀 보고 한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5일, 7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좀 더 합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7일 드셔야 된다는 것, 따뜻한 밥을 맛있게 드셔야 된다는 그 논리는 저희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재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별 편차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문제겠지만 그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대안들을 고민을 먼저 해 주시면 우선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의견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좀 한 말씀만……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예?

○**소위원장 김미애** 아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선심……

○**강선우 위원** 그 고민을 하려면 진작 했었어야지.

○**소위원장 김미애**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선심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여기에 국한해서 드린 게 아니라 다수의 의원이 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그때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그러면 바로 해야 되면 정부와 타 부처와의 협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지 저도 발의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희망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선심성이라고 한 말이 아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제 발언이 오해가 있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 이걸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난 8월 말 법안심사 때 기재부에게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해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10월까지 하겠다 했는데 했어요. 국무회의가 10월 29일 날 의결했고 11월 5일 날 시행됐는데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반응을 보니 우선 됐다가 뺏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이거 정산하는 거 귀찮은데 이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것만 해도 그나마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점차적으로 부식구입비든 인건비든 이런 거는 올려 주시길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부도, 우리만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와 협의 없이 하면 또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희 위원님이 부식구입비가 공통된 항목인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만 또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우리가 22대에 들어와서 이 관련해서 두 번째 심사를 했습니다. 한번 한 거는 기재부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해서 우리가 성과를 냈고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럴 여지를 좀 두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강선우 위원** 관련해 가지고 진짜 토론 길게 하고 오래 했는데 지금 지원 대상 정리하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게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반대하는 기재부를 그러면 계속 설득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재부가 이런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언제 한번 ‘아, 좋습니다’ 하고 찬성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늘 있었던 상수예요. 갑자기 기재부의 의견 등등이 이번 이거 관련해 가지고 튀어나온 변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재부는 늘 그래 왔어요. 그거는 그냥 깔고 가는 변수예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위원장님……

○**강선우 위원** 지원 대상 정리하고요. 그리고 그 정리할 시간 필요하니까 정회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미애** 임을기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노인정책국장 임을기입니다.

어르신들 주 5일 급식을 위해서 지자체도 노력해 주시고 복지부도 노인일자리 많이 하

고 있는데요. 이 부식비 관련해서는 실은 보조금법에 다 아시다시피 예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남는 금액을 쓸 수 있도록, 원래는 제외 사항인데도 이 법들이 상정이 돼 있으니 시행령을 개정……

○**강선우 위원** 제 질의에 답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시행령을 개정을 해 주시면 실은 저희가 좀 더 이걸 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노력하겠다고 기재부를 설득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집행률을 보니까 한 104억 그리고 지방비까지 하면 216억 정도 되고요. 또 상임위에서 냉난방비를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10% 정도. 그러면 지금 지방에서 한 860억 정도가 부식비로 쓰이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한 42%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조금법 시행령이 실은 저희가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충분히 주면 지방에서 부식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만든 한 해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월 5일 날 기재부하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해서 어렵사리 만들어졌고 이게 시행도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법안까지 이렇게 되면 저희도 부처 간에 협력하는 게 참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예,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 위원** 저희가 국회에서 아주 참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가 법안소위하면서 의견이 있으면 뒤로 넘기는 것, 어느 때는 제가 한 8시간 동안 3건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정말 없애야 되고. 여기 이번에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을 냈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우리 국회의 욕심대로 안 될 거면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전부 공통되는 것만이라도 추려서 이 법안은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미 다 된 줄 알아요, 지역 경로당 이런 데서는. 이미 다 이게 해결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 홍보들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거 하지 않으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미애** 우리 위원님들이 부처 간에 협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위가 10월 말까지 꼭 하시라고 그러면 그때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도 그에 대해 한번 신뢰는 드리는 게 맞다라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하자라고 하시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논의를 합시다. 그 안에 부처 간에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마지막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그리고 임을기 노인정책관님, 방금 발언하신 게 누구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까? 제 발언 이후에 바로 발언하셨어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강선우 위원** 법안 심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예.

○**강선우 위원** 국회에서 법안 심사하는 자리고 부처 간에……

저 여쭙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 간에 이렇게 협의를 했다, 부처 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법안 통과시키지 말아라. 본인이 했던 발언의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위원장님,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위원님, 지금 제가 발언한 거는 위원님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셔서 한 건 아니고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해서 강선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한 부연 답변인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강선우 위원** 그래서 그건 여쭤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건 여쭤보고 확인했잖아요. 확인을 했고, 본인 발언 중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김남희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 아까 먼저 들어서.

말씀하세요.

○**한지아 위원** 저는 그래도 다른 법안들도 중요하니까요. 이게 너무 첨예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뒤로 미루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희 위원** 저는 지금 그래도 얘기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2024년 2월 6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 주 7일 점심제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지역별로 현수막 붙일 때 경로당 급식 지원 관련된 그 현수막은 어느 동네에나 다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좀 책임감 있는 태도로 법안심사에 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차관님, 저희 총선 공약 사항이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책임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랑 논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방식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그래서 그게 구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부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정리……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미애** 김예지 위원님 첫 번째 손 들었으니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김예지 위원** 저는 굉장히 이 법안들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총선 공약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양당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아닌 것 같고요.

시행령이 보통은 정해지게 되면은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절차상,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아니다라는 논의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시행되었다고 지금 바로 그게 어떻게 되

는 것이 아니라 또 내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아야 하고 이런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것이 잘 안착되었는가에 관련해서 또 지방이양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개정안을 정리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데 저희가 병합 심사할 때 이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들도 막 포함돼 가지고 이름만 같으면, 법안 이름만 같으면 그냥 막 올려 가지고 이렇게 심사하는 것도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도 이게 통과가 되면은, 대안반영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심사돼서 통과될 때도 같은 법안 취급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일부 반대가 있어도 그냥 어부지리로 이렇게 막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법안이고 내용이 비슷한데도 같이 통합심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조금 규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 박주민 위원장님이랑—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두 분 간사님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법안은 발의 시기가 비슷할 경우에는 통합심사될 수 있게 그런데 그 내용은 좀 비슷할 수 있게, 왜냐면은 내용의 방향이나 취지가 비슷하면 같이 심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름이 같더라도 내용이 좀 다른 게 있는데 같이 논의된다는 거는 편의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숙고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지양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예지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은 하는데 그러나 이걸 상정을 할 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행정실 전부 논의도 하고 또 법안 하나하나를 다 살피기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라, 그런 인식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선우 간사님과 의논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박희승 위원** 아니, 서미화 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소위원장 김미애** 아, 서미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미화 위원** 서미화입니다.

강선우 간사님께서 자꾸 제안을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미루자고 위원장님 얘기하는데 오늘 법안이 지금 할 게 굉장히 많고 뒤로 미루다 보면 또 이걸 갖고 처음부터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잠깐 정회해서 정부하고 얘기해서 안을 만들어서 일단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회하고 하는 방향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저는 김예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안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안착이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지 보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정회보다는 다른 법안들을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법안심사소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위원장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저는 대부분 양해를 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보류시켜 놓고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선우 간사님이 계속 손을 들어 주시는데.

○강선우 위원 정회하고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행령 내용 보시면 명확하게 급식비 지원 강화하는 내용 아닙니다. 냉난방비에 넣는 돈을 급식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놓고, 아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첨예하게 대립은 아닌 거지요. 뭐를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면 1번,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꼼수로 예산 지원할 건가? 2번, 법적 근거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할 건가예요.

단순화시켜서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 짓고 넘어갈 것을 위원장님께 절실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제 한지아 위원님까지 발언 듣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서 다음 법안심사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공약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다. 다만 정부 재정과 관련 부처의 협업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그 간단한 걸 뭐 하러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도 다 했어야 되지요. 그때는 또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다 원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소병훈 위원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뒤로 미룬다는 건 오늘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소위원장 김미애 22대가 이제 몇 달입니까?

○소병훈 위원 아니, 22대가 몇 달이 아니라 22대 이전에도 이런 일을 전부 못 했고 이렇게 으레 관행적으로 법안 하나를 뒤로 미루는 건 평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만 지금 국회에서 정부를 봐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내 생각에는 지금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오늘 하지 마시고 좀 뒤로 미뤄 주셔서 정부 측에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뒤에 의안들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의안 진행하는 동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부하고 우리 여야 간에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정리된 안, 여기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법안을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취합해서 여기에서 처리하고 가자. 그래야 앞으로 우리 복지위 법안들이 순조롭게, 이런 식으로 이제 펑켓거리 만들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다. 야당도 펑계 안 걸겠습니다. 여당이 꼭 필요한 법안 같으면 그 자리에서 협의하고 새로운 수정안 만들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위가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은 여기서 정리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뒤로 미루지 맙시다.

**○소위원장 김미애**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우리가 법안심사뿐만 아니라 여러 소위가 있었는데 대부분 쟁점이 있고 더 논의가 필요하면 마지막으로 보류했다가 심사를 해 왔습니다. 오늘 이 논의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소병훈 위원** 아니, 의원 간에 쟁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좀 더 시간을 정부에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의원 간에 쟁점이 없는데 왜……

**○소위원장 김미애** 쟁점이…… 정부에 시간을 주자는 게 아니라 저도, 저 의원 개인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오늘 당장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서 또다시 시간을 더 다른 부처와의 협업 때문에 지체되기보다 속성을 해서 논의의 끝을 내도 저는 된다는 생각이고 국민의힘도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22대에 들어와서 첫해고 5월 30일 날 개원했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발의한 당사자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자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무리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정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정회를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오늘 이 하나의 법안심사에서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었음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언제 속개를 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강선우 위원** 전문위원이랑 정부, 정리해 주십시오.

**○소병훈 위원** 협의한 다음에……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하나 그러면 건의를 드릴게요.

어차피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 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속개를 할 때 그걸 다시 첫 번째로 논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른 것 좀 심사를 하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했다가 또 점심시간 하기보다 저는 시간의 효율적 사용 차원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선우 위원** 지금 정회해서 점심때까지 전문위원이랑 정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러고 나서 속개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미애** 12시까지 좀 다른 걸 심사하다가 2시간 동안 하고……

**○강선우 위원** 아니, 그러면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뭐 정리하고 그거보다 지금 정리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미애** 지금 바로 뭐 되겠습니까?

하여튼 양해해 주시면 12시까지 하고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면서 바로 이걸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합시다.

○**소병훈 위원** 아니, 왜 정회하겠다고 하셨다가 또 맘이 금방……

○**소위원장 김미애** 아니, 제가 시간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소병훈 위원** 아니, 그냥 합시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모아 가지고……

○**강선우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미애** 위원장의 의견도 존중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힘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한 15분 정회하셨다가……

○**소위원장 김미애** 15분 동안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그것은 두 분 간사님들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고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지요. 그러면 되지요. 정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회를 또 안 하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미화 위원** 점심시간을 좀 줄이고 지금 정회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점심시간을 1시 반이나 1시에 속개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미애** 아니, 12시에 정회하고 2시에 속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대부분 그 안에 다른 약속들이 또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해서 2시에 속개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2시에 속개해요, 그러면 지금 정회하고.

○**소위원장 김미애** 그렇게 많이나 정회를 하고 하시려고?

○**서미화 위원** 논의를 해야 되니까. 논의를 한다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시까지 다른 것 좀 합시다. 오늘 안건도 많은데 하고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걸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시에 속개해서 첫 번째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2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장종태 의원입니다.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터 최저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노인일자리 유형은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 공익활동형과 관련된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노인일자리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의 경우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판단되고 있는데 근로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논거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익활동형은 자기만족·성취향상 등을 위한 자원봉사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현장에 미치는 부수적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전문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이 공익활동형은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고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거라고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 소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건 최저임금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원금 단가를 인상하면서 그 단가 인상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장종태 위원님.

○**장종태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가 되겠는데요. 이 공공형 어르신들 일자는 내용을 아시다시피 하루에 3시간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열흘을 이분들이 공공형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수령하는 한 달 임금이 29만 원입니다.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급으로 지급하는 그 임금 자체를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얘기는, 지금 공공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미 시간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자를 시키지 않고 또 한 달에 한 열흘 정도밖에 근로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29만 원 주는 건데 저는 여기에 시급 자체를 최저임금 수준인, 내년도 같으면 1만 3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는 것은 29만 원을 10일간 3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9667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근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를 들어서 자꾸 그걸 지금 회피를 하시는데 이걸 좀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실제 여기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기초수급이거나 또 차상위 계층들, 가장 어려운 계층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저는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 의견에 보면 어쨌든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떨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부처 의견도 신중검토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몇 시간 근무 이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시간 근무 그래서 근로자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거랑 달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거로도 우려가 되실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근기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인데이요. 사실 근로자라는 말씀은,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 16시간 이상을 근로해야만 근로시간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그거보다 이게 현저히 작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작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보면……

○**김예지 위원** 예, 그래서 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마침 금년 1월 26일 날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판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쓰레기 줍기 하는 공익형 어르신께서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을 하셨어요.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그 망자의 가족들이 산재보험을 청구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나왔던 것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원봉사의 성격이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금인 성격이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사실 최저임금 그런 단계 그런 거를 결부하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 29만 원 주는 거는 계속 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에 동의는 드리는 겁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약간 우려성이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자연 물가상승률에 맞추도록 매뉴얼을 좀 변경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공익성은 공익성 그대로 두시고 하지만 노인분들께서 본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게 하는 차원으로의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금년에 사실은 저희가 6년 만에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2만 원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도……

○**김예지 위원** 그런데 그게 자연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 것……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안 됐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니까 계속 6년 동안 안 올랐던 것을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예결위 소위에서도 자연 물가상승률 올리는 것은 10% 정도로 해서 반영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는 사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제가 보니까 시니어클럽협회에서도 이렇게 지위가 변경되면 예를 들어 의무고용이라든가 다양한, 고용보험료 요율 인상 등 이게 수반될 수 있어서 본인들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견을 냈는데 혹시 당사자단체들 의견도 들어 보셨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시니어클럽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아마 근로자성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무고용이라든지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라든지 고보료 인상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김예지 위원** 어쨌든 저는 자연 물가상승률이 자꾸 반영이 안 돼서 최저임금이라는 워딩까지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어렵게 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공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봉사정

신을 그대로 고취시키실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성이 우려돼서 이렇게 부담을 안 드리고 또 이분들을 중개하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 독려하고 하시는 분들도 서로 부담이 안 될 만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다른 위원님들.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통계에는 잡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계속 잡혀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고용통계에는 잡히는데 그러나 이게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인 이유는 사실은 행정법원 판결대로 근로자성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강하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활동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대로 끌어다 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소위원장 김미애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아까 산재도 아마 돌아가신 게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김선민 위원 일하시다가 교통사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김선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마 판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미애 공익활동형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연세가 80세 전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들과 동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교통사고 위험 같은 게 높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많은데 그분들에게 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하면 해마다 교통사고가 몇 건씩, 도로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 교통도우미도 하고 이러면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근로자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차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금’이라는 표현을 노인일자리에서 쓰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법원 판결에서도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게 근로자와 연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법안 취지에 따라서, 아까 김예지 위원님도 의견 주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 아까 말씀 주신 것도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종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원래 고유의 뜻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분들에게 적정 임금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장종태 위원님, 복지부차관 의견 들으셨는데……

○**장종태 위원** 지금 취지는 맞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핑계시키지 말고,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지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한번 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그런 조항도 괜찮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어려운 계층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시키고 국가에서 좀 지원하는 건데 뭐 그것 그렇게 박하게,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느냐. 그리고 소득에 좀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근로자성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발생할 것이 그렇게 우려된다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어서라도 어르신들의 소득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예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올라가고 안 되면 안 올라가고 그렇게 해 와서 지난번에 6년 만에 저희가 2만 원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임금을 보전한다는 그런 실가치기 때문에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지금 기재부도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또 갔습니다.

○**장종태 위원** 아, 기재부 가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장종태 위원** 좀 화가 나는 대목이 하여튼 말만 하면 뭐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 약자복지를 늘 주장하면서도…… 이런 것이 약자복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저도 장종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인데, 아까 표현을 ‘왜 박하게 하냐’ 하셨는데 박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금년에 2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장종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차후에 정리되는 그걸로 하도록 계속 심사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정리하시길 원합니까?

○**장종태 위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뭔가 언질을 해야지요. 뭔가 얘기를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차관님, 그것을 좀 정리를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문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중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용구에서 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을 명시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공고 시에 태블릿PC, 사물인터넷 기기와 같이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이 아닌 소프트웨어 단독으로만 운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제품은 신규 급여 신청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의 경우에도 급여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돌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출시·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구와 용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때 두 용어 간 의미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용어 변경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 의견은 용구와 용품의 차이 같습니다. 기존에는 용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구에다 팔호 열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같은 의견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구는 그대로 두고 팔호 해서 소프트웨어 포함.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김남희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그 지역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려는 것이고, 진성준 의원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농산어촌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지자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서울요양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남희 의원안에서 30%라는 목표는 자체 등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지역별 상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준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48조제2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규정할 경우 현행법 제48조의 내용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 어르신들이 1000만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들을 많이 만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일단 법에다가 이렇게 몇 개의 비율을 담는 것은 그런 선례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 전국에 63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총족률이 79%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앞에서 보다시피 거의 국·공립 시설이 입소 같은 게 1.9%밖에 안 돼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비율을 박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그런데 제가 낸 법안이 의무화하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이고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첫 번째는 사실 1.9%가 입소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있는 시설도 정원 충족률이 79.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언적 의미는 괜찮은데, 저희가 옛날부터 가장 많이 했던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30%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노력 조항이지 그게 시설 숫자가 담겨 있지는 않거든요.

○김남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결국 거의 30% 수준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공공 전체로는 넘었고요, 국·공립은 아마 2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노력 조항은 지금 장기요양법 4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에 이미 그 내용이, 국가·지자체는 노인·특성을 반영해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4조에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 것 말고요.

○소위원장 김미애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적정한 수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영유아보육법 수준으로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그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영유아보육법은 1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된다’. 각 호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 취약지역입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수준이라도 장기요양보험법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그 유사 조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4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4조는 확충하라는 내용이지, 이게 국·공립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국·공립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해 주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그러시면 이것을…… 지금 적정한 수 설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 3항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4항으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 정도는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국·공립 운영되는 곳이 극히 미미한데 몇 개쯤 돼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국·공립이 122개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아, 122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입소시설 122개, 재가시설이 148개입니다. 둘 합해서 270 개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122개, 148개 뭐 이런데 그러면 입소시설 입소율은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입소 전체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체 국·공립 시설 그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전국의 전체 충원율이 79.3%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민간 것 포함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것 말고 그러면……

○**김남희 위원** 국·공립 요양시설은 못 들어가서 난리지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좀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트랙 다운된 게 있는데 공립시설이 설치가 된 곳은 81.0% 가 되겠고요. 공립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78.3%가 돼 가지고 약 3%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만족도는 여기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소위원장 김미애** 입소율과 만족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이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민간보다 훨씬 높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확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조문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김남희 위원** 오늘 중에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만들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4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4~6항이 하나씩 밀리겠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1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지출비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38조는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 고시에서는 급여의 종류별로 인건비 의무 지출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지출비율을 미준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한입니다.

현행법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급여제공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는 경우도 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자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 등 범죄로 인하여 급여제공을 거부할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급여외행위의 범위에는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병원과 거의 같은 기준입니다. 병원도 행위별 수가에 따라서 진료비를 받고 받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중에서 종사자, 간호사, 의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노인장기요양 같은 경우도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적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단지 그건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비율, 85% 정도는 인건비로 나간다라든지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출 위반 시 시정명령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인건비를 정할 수가 없으면 뒤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급자나 그 가족이 폭언·폭행·상해를 했을 경우에는 받지 않는 건데 도리어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잘못한 게 있을 경우에는 도리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차관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6항에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의무 조항에 대해서 의무 조항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에 어떻게 반대를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는……

○**김남희 위원** 그러면 그 의무 조항을 왜 만드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건 그겁니다.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기관 또 재가기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고시를 해 주고 있고……

○**김남희 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지키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게 안 지키게 되면 제재 조항이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위원님,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준수 비율 자체를 지키도록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지키는 경우에, 간혹 요양시설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요양보호사 구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의도치 않아도 준수율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반 처분 조항을 넣게 되면…… 원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저희가 내년부터는 준수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별도 항목으로 마련을 해서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처분을 하기보다는 평가로 인해서 그 시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압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지출비율만 정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안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지키겠어요? 그러면 그걸 왜 정하셨어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지금 준수율이 기관들 전체로 한 8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김남희 위원** 그럼 20%가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왜 만드신 거예요? 20%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그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법에서 의무 조항을 만들고 의무 조항을 안 지켰을 때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가지고 지금 20%가, 5분의 1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분의 1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걸 거부하는 근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치매 등 행위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당했을 때 그거 다 견뎌야 돼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남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건 아닙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조치로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의 경우에는 제공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놔야 노동자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이거든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위원님, 폭언·폭행한,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바로 별도로 다른, 실제 보호를 받아야 할 분하고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급여를, 개인에 대해서 급여 제공을 가족들이 제기했을 때도 못하게 하면 급여를 받는 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그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급여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위원님, 지금 장기요양법에도 35조의4에 보면 아마 그 조항이 아시겠지만 장기요양기관장이 이러한 폭언이나 폭행·성희롱·성폭력이 있을 경우에 업무 전환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다가 실은 이게 받으셔야 할, 돌봄을 받으셔야 할 분이 도리어 돌봄 못 받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남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급여 제공을 무조건 거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왜 이 조항이 들어왔는지 그 맥락을 모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니, 맥락……

○**김남희 위원**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지금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안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요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 취지 때문에 이 법안을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반드시 거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 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으니까, 장기요양급여 제공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법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외 조문이 필요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우리 종사자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같은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35조에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인데, 룸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받겠지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급권자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넣는다는 것은 약간 저희는 부담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이것을……

○**김남희 위원** 장기요양보호사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서로 형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에 가시는 분들이 주로 1·2등급 하시는 분들인데 또 이 1·2등급 자체가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사유로 포섭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고민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걸로 지금 현재 포섭이 안 되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돌봄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거부를 하면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거부를 하면 돌봄 받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거부를 하면 입소를 못 하든지 아니면 입소한 분들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아예 이분들은 정말 또 사각지대로 몰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을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협행법이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적절한 조치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별로 적절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민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김남희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러면 제재를 했을 때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몰리지 않고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해 버리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그게 가장 걱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런데 또 장기요양요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저희도 우려 사항이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게 되면, 이 어르신들 경우에는 방문요양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의 급여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돌봄을 못 받을 개연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희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잘못 해석하시는 거고 지금 법에 보면 35조 1항의 규정은 기관이 신청을 받을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은 수급자가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기관이 안 되면 다른 기관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규정은 그 기관이 요양급여 제공 신청받았을 때 이분이 폭행이나 성희롱 그런 게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서 ‘저희는 이렇게는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지 이분이 장기요양 못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35조 1항 다시 보세요. 이거는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무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급자가 요청하면 원래 모든 기관이 해 줘야 되는 거지만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이분이 뭔가 폭행이든 성희롱이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조문인데 이분이 아예 장기요양급여 못 받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지금 35조 조문 다시 보세요. 제 말이 잘못됐나

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위원님 말씀, 35조를 뜯어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언적 조항이 되겠고요.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때, 룸이 없을 때겠지요. 이런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당한 사유에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를 넣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 받는 시설에서 그런 걸 통해서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분의 수급에 지장이 간다 그런 얘기지요.

○**김남희 위원** 아니, 다른 기관에 가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요양 수급이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요양 수급은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시설이나 그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이나 그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그 기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그 기관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체가 장기요양기관인데 장기요양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거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해당 기관이라는 것도 없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총체적인 조항이잖아요,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김남희 위원** 아니, 그게 사유가 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사유가 있는 기관만 해당되지 사유가 없는 기관이 어떻게 해당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분의 성희룡, 폭행 그런 것은 따라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처럼 말씀 주신다고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이것은 전체가 같이 묶여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설에서 나를 이렇게 폭행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받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있는 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남희 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한 번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모든 시설에서 거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모든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희 위원** 모든 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을기** 35조 1항이 해당 기관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김남희 위원** 그렇지요. 받은 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당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받은 기관에 대한 얘기지요.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소위원장 김미애** 여기는 제가 볼 때 정부도 그렇고 김남희 위원님 뜻은 공감을 하시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뭔 얘기인지 압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를 정부가 알면서 이걸 받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조문 구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전문위원 검토도 유사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지금 그 해당 기관이라는 말은, 저는 이 조문이 김남희 위원님 취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급여외행위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이걸 좀 제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도 급여외행위를 빼고 그러면 범죄 피해로 한정해 가지고 수정안 만드는 걸 제안을……

○**소위원장 김미애** 범죄로 하면 또 너무 넓어질……

○**김남희 위원** 범죄 피해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폭언·폭행·성희롱.

○**소위원장 김미애** 김선민 위원님 의견 듣고, 이건 좀 더 정부가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는 입법을, 어떻게 다듬을지 고민을 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급여를 제한하는 것하고의 사이에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수급자하고 그 가족은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가족은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을 하게 되면, 물론 가족이 했는데 왜 이 수급자가 피해를 보느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가족이 하면, 수급자를 안 돌봐주면 피해를 볼 사람이 가족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제한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치매 같은 경우에 치매의 증상이 폭언·폭행·성폭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여를 제한하는 것하고, 현재 지금 그것하고 사이의 고민 그다음에 시설에서의 급여를 제한하는 문제하고 방문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예 못 받는 건 답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둥뚱 그려 봤을 때는 뭔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할지를 고민해 오십시오, 김남희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셔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고민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까 김선민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과 수급권자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도 제한할 거냐, 그건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또 하나, 오늘 논의할 것 중에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것은 계속 이렇게

법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 이 법안 심의하는 내용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관장하는 모든 종사자와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에 대한 법적 기준 그다음에 현재 처우의 현황 그리고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복지부에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포맷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주시면 앞으로 법안을 심의하거나 예산 다룰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별도로 정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장기요양기관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오후 중에 내용 정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져다주셨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미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계속 심사를 했었고 바로 우리가, 여러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조금조금 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집합을 찾아서 그러면 부식비만이라도 좀 통과를 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의견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2소위 처음 할 때 여기에 참석한 기재부에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말까지 반드시 통과시켜라, 그것 보고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로 상호 간에 존중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켜 왔는데 게다가 이번에 우리가 오늘 부식비 이게 통과 안 된다고, 통과되나 안 되나 내년 예산안에 또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텀을 두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면 어떻느냐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복지부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도 내년 부식비 관련해서 증액을 했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증액을 69억 정도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증액을 했고 지금 우리는 양당 공히 공약도 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오늘 심사해서 바로 결론을 내야 되냐, 아니면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것을 조금 숙고를 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혹시 차관님, 내년 예산안에서 좀 더 반영할 여지는 없는지, 그렇게 하면 경로당 부식비가 어느 정도 증액의 효과가 있는지 그거라도 한 번만 들어 봅시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부식비는 총 861억 정도가 지자체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냉난방비의 남는 돈을 한다고 그러면 지난해 실집행률을 적용했을 때 한 104억 원 정도가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경로당별로는 한 3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 증액분에 냉난방비 10%를 인상했을 때 68억 8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경로당별로는 21만 원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그 21만 원은 연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연 5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현 상태에서는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지난번처럼 냉난방비의 잔액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더 늘린다고 그러면, 지금 68억이지만 이것을 2배, 3배로 늘린다고 그러면 그만한 돈이 결국은 경로당으로 가서 부식비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아까 강선우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강선우 위원**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안 관련 얘기하기 전에 아까 임을기 국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저는 유감 표명을 해야겠습니다.

법안 심사하는 자리예요, 법안심사. 부처에서 법안의 내용 관련해서는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국민께 더 도움이 된다, 저런 방향으로 가면 덜 도움이 된다, 얼마든지 갑론을 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스펙트럼 제한 없이.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부처 간에 협의를 했으니까 이 법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국민을 모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국회에서 여기 다 앉아 가지고 지금 그것도 경로당 밥상 관련된 예산 관련한 법안 심사하고 있는데 기재부랑 복지부랑 협의했으니까 됐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계속 지금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가니까 미루자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계속 미루자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재부가 자기들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으로 내리는 것은 자존심이 안 상하고 어차피 그렇게 그렇게 똑같이 내려 줄 것 복지위에서 법적 근거 만들어 가지고 내려야 되면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이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행령이 유사한 취지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을 이것과 같이 개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따릅니까? 왜 이렇게 저항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정회하자 어쩌자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국회 전문위원안 마련하라고 했고 복지부에서도 정리해 가지고 안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국회는 안 마련한 것 있습니까? 복지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는 없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렇지요.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국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하셨어요? 복지부는 국민의힘이 안을 정리한다고 그러던데요?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선우 위원** 그러면 다 안 한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미애** 아니지요.

○**강선우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도돌이표를 하면서 저는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이것 여기서 오늘 회의에서 안 하실 거면 저희 법안심사 더 이상 못하고요. 그리고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서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안전 상정하겠습니다.

23년 12월 20일 복지위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체회의 상정해 가지고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어요. 논의해서 통과시킬 건지 아닐 건지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슨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을 다음에 하자? 못 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지금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지요. 이게 그러면 21대 때는 왜 안 했고 지난번에 왜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법안이나 현안은 이견이 그렇게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같은 입장인데 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재원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거지 그런 것을 지금 마치 반대한다는 듯이 할 그런 것도 아니고……

○**강선우 위원**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도 반대 안 하잖아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반대 안 하지요.

○**강선우 위원** 반대 안 하는데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미룬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미애** 아까 또……

○**강선우 위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심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두 번 심사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집행잔액으로 부식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것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논의하자라는 얘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팩트 체크도 한번 할게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는 104억 남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연말이 지나 봐야 합니다.

○**김남희 위원** 안 잡혀 있지요? 연말 지나야 알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104억 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대체로……

○**김남희 위원** 지금 104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실제로 남아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4억 남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얘기하신 52만 원도 그냥 추정치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소위원장 김미애** 잠깐만요.

○**김남희 위원** 전혀 해결된 것이……

○**소위원장 김미애** 그냥 다른 의견 없으면 이거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미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말씀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누구라도?

김선민 위원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

○**김선민 위원** 저는 오늘 부식비를 포함해서 통과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부식비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법률안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부식비만이라도 오늘 가결되기를 희망하신다는 의견이시고?

○**김선민 위원** 예.

○**소위원장 김미애** 그다음에 우리 김예지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김예지 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만 그 내용에서 이제 누락되는 부분들이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이게 지금 같이 병합심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 기관이나 이런 데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 관련한 내용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재심사될 수 있도록 좀 남겨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게 저도 늘 그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김예지 위원** 다시 재발의를 하고 막……

○**소위원장 김미애** 그거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김예지 위원** 그게 너무……

○**소위원장 김미애** 그리고 속도를 내서, 다른 것들도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이 재원 마련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쉽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그러나 그 태도는 거의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소극적인 면이고 그런 것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재부에게 10월까지 하라고 하고 그때 또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강경합니다. 부식비만이라도 꼭 오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충선에 각 당마다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어르신들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희생·헌신하신, 저는 그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야말로 이거는 대폭 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재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 부분은 제 희망대로만 해서

는 안 된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봄시다라고 했는데 오늘 소위에 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공통분모인 부식비만이라도 통과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안을 준비하신 게 있어요?

(정경윤 전문위원, 소위원장에게 서류 전달)

그러면 다 배포해 주십시오. 조정의견을 준비를 하셨네요.

전문위원님, 지금 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지요?

○전문위원 정경윤 예.

○소위원장 김미애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경윤 조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9건 중에서 14건이 부식구입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운영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지원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식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조의2 1항에 부식구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하여서는 소요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런 조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해 주신 어르신들이 주 5일 식사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잘 모시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양곡비라든지 냉난방비를 드리고 있고 또 사실 부식비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11월 5일 날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8월 23일인가요, 그때 기재부에서 와서 열심히 성의도 표시하고 법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동의를 하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 협의할 시간을 그러면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어차피 금년 내로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래 봐야 한 달 안이겠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사실 기재부와 서로 저도 계속 회의를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와서 그렇게 했는데 또 다음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참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도 사실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다음 소위까지만이라도 이거를 보류했다가 그때 아니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강선우 위원**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강선우 위원님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소병훈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올해 안에 한다면 이대로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2026년이에요.

○**소병훈 위원** 26년?

○**김남희 위원** 예, 한참 남았어요.

○**소병훈 위원** 그러면 안 돼.

○**박희승 위원** 아니, 지금 사실은 시행 날짜가 2026년 1월 1일이에요, 내년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복지부도 충분히 의견을 나눌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습니까? 지금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026년……

○**소위원장 김미애** 그 예산안은 이미, 내년 예산안은 됐기 때문에.

○**강선우 위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소위원장 김미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듣고……

○**박희승 위원**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오늘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남희 위원** 예, 통과시킵시다.

○**소위원장 김미애** 저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위원님들 뜻들은 제가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저런 고충도 조금은 우리가 존중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텁이라도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드리자는 건데 보시다시피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조정의견에 대해서는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선민 위원** 저는 예.

○**소위원장 김미애**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저는 이견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

○**소위원장 김미애**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이 조정의견 온 것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다 이렇게 하길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뜻을 잘 전달해서 우리가 약속드린 대로 경로당 어르신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런 쳐우를 할 수 있도록,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복지부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 정부 입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미 이렇게 한 번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소병훈 위원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전달됐을 겁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의사일정 제2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아까 정리를 하시기로 했는데 정리됐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정리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리된 것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두 개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법하고 노인 장기요양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종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제23조입니다. 참여자 보호 조항이 되겠고요. 2항에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부칙 같은 경우에는 시행일은 23조 2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견입니다. 제4조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장종태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없습니다.

○장종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괜찮습니까?

○김남희 위원 예.

○장종태 위원 예.

○소위원장 김미애 의사일정 제21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도 지역장애인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도 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경우 중앙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및 절차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 법안은 지난 21대에도 법사위까지 갔던 법안입니다. 수정의견에 정부도 동의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중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이 표현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항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활동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게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 외에 인건비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장애실태조사에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실태조사에서 장애인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총괄하여 조사하므로 조사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특별한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구분 청구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크게 3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노력 책무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입니다. 다만 부칙에 25년 1월 1일 시행으로 못 박혀 있는데 이것은 법 통과 시점을 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의무 신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지금 바우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바우처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여기에 이렇게 지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저는 다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다. 실태조사 등 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관련 차관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또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양한 이유로 활동지원사를 매칭받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예산제를 통해서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로 확충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우개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정해 주는 것은, 급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뭔가 또 칸막이를 두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정책 방향성으로서 맞지 않다고 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자격증, 관련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근로지원 같은 경우는 추가 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만 수어 통역, 점자교정사 자격증 이런 게 있을 경우의 예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열어 두는 거는 좋지만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백종현 위원님.

○**백종현 위원** 차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과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실제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복지부의 사업 실태 파악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본 개정안에 활동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활동지원기관하고 종사자 간 근로계약 준수 여부에 따라서 활동지원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고 또 복지부는 이를 민간의 근로계약 관계로 보고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맞습니다.

○**백종현 위원** 오늘 논의 이 계기로 또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시고 활동지원인력의 실태조사와 매칭률 개선, 적정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서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사실 활동지원기관의 임무에 있어서 활동지원인력의 근로 환경이라든지 또 적정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바우처로 하고 있는데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부담돼서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예지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미애** 예.

○**김예지 위원** 차관님, 저는 그 ‘부담’이라는 워딩보다는 우선 바우처의 종류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서비스, 어떤 바우처, 어떤 지원책들이 들어올 건지에 따라서, 지금 개인예산제가 2026년 본사업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지금 시범사업 중에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우선 두고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 적정 자격증 소지자 아니면 경력자 이런 기준을 그때 가서 마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혹시 위원장님, 이것 원안대로가 아니고 지금 1항·2항은 제가 동의를 했고 3항·4항은 신중검토 입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27항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거는 계속 심사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제가 두 개를……

○**소위원장 김미애** 의사일정 제27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먼저 28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민간이 시설주인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시설주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므로, 비용 보전 문제는 비용 보전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원안을 가결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정부 수용입니다.

다만 하나 의견을 드릴 것은 있습니다. 이 법이 공포 후 6개월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데 사실 여러 가지 이용시설에 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1년으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예, 대표발의자로서 수용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연광석** 계속 29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BF 인증 의무가 없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등급을 받은 경우 그 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건축물의 준공이 완료된 후 본인증을 받지 못하면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적률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체계 및 지방자치제도 취지와의 관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고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도 의무인증이 아니더라도 예비인증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의 취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인증 때 이것이 조세특례제한법처럼 조세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건폐율·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혹시라도 안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배리어 프리는 돼야 됩니다.

○김예지 위원 제가 낸 안 말고 독려책으로 어떤 것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도 조세감면을 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저도 그 법안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러면 어쨌든 관련된 부처가 사실 복지부인 거잖아요. 물론 국토부가 소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국토부를 설득하거나 해서 좀 더 높은 도입률을 올리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인증을 예비라도 했다가 그 인센티브를 주고 다시 회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폐율·용적률이거든요. 그런데 조세감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BF 인증을 취득해서 인증을 활성화하고 혹시라도 안 되게 되면 이걸 회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일본 경우에도 배리어프리법에서 이 편의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외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크기를 좀 생각했을 때 비슷한 나라로 제가 일본을 든 것뿐입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국토가 넓으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은 약간 그래도 비교가 될 만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방안 제시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 가지고 유감이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예비인증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사항도 또 제가 인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인증 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또 협조를 좀…… 복지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 법안은 복지부 법안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협조를 잘 해 주실 계획이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먼저 30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건강 분야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도 장애인법안에 보면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에 의견을 듣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법이라고 기본법적인 성격의 제5조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약간 실익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차관님, 실익보다는 전에 저희 올해까지 종합계획 말씀하셨잖아요, 건강권법에 따른 종합계획. 지금 7년째 안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계획 말씀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준비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 사실 이것과 지금 장애인복지법상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게 장애인 건강권법이라는, 건강을 주체적으로 하는 근거법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지금 종합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요. 차관님, 실익은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참여 이것 지금 종합계획안에서도 거기 명시해 주셔야 다음 계획을 세울 때도 실제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받으실 분들의 입장이 보완이 되어야 항상 개선책을 마련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실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혹시 복지부가 생각하는 실익은 다른 데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저희도 그 의견은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법체계적으로 모든……

○**김예지 위원** 그래도 복지법상의 참여와 건강권법상의 참여는 다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무슨 종합계획을, 국민연금의 종합운영계획이라든지 노인복지계획이 있을 때 그건 전체적인 조항에서 하지 그 조항마다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그런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소통의 방법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계의 입장만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건강’ ‘의료’

이렇게 되면. 차관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김예지 위원 그래서 복지법상 거기서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 학계나 그다음에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단체, 단체만 피력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서 구체화해서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신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더 존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반대는 안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위원님, 법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도 사실은 이렇게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김예지 위원 그래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 건강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만……

○김예지 위원 건강은 사실 개인적인 이슈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너무 다르고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있잖아요. 물론 건강권에도 방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권을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재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재활을 다 마치고 일상을 영위하는 저 같은 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원래 비장애인�이었다가 사고나 이런 등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신 그런 상황이라 치료까지 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변화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실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위원님, 만약에 장애인 건강보건종합관리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뭔가 특별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구를 한번 같이……

○김예지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김예지 위원 그러면 언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건 좀 저희가 계류시켜 놓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예지 위원 얼마큼 가지면 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왜냐하면 이것 자체……

○김예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해까지 이것 종합계획 하신다고 왔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저는 거기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넣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이 법안 계류를 시켜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니까 저희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서로 상의드리고 또 서미화 위원님 다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김예지 위원 이거 서미화 의원님 법안은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미애 같이 상의하면 좋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같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김예지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것 수정안 기다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것 같이 한번 특별하게, 건강보건관리계획에 있는 특별한 그런 조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잘 의논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31항.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제 이름을 말하니까 한마디 해야지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미애** 서미화 위원님 하십시오.

○**서미화 위원** 차관님께서 법체계를 자꾸 얘기하시는 데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는 계획이지요, 종합계획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5년입니다.

○**서미화 위원** 그런데 7년간 안 나오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법률을 개정해서, 장애인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제안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김예지 의원님 법안 내용에 대해서, 법체계가 안 맞으면 이 법률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 자꾸 법체계를 얘기하는데 장애인복지법은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직접적인 건강증진법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계획에 담아서 세워라 이 내용인데 해도 되지 않나요, 차관님? 우리가 입법부인데 법체계가 그렇게 흐트러지는 건가요, 이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많은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의 그것은 항상 기본법적인 성격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 장애인 당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담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혹시라도 이 법 자체가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고 또 여기 뒤에 있는 계획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것을 담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건강에 특화돼서 그 내용을 담아 줘야 된다.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그것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논의해 드리겠다, 같이 하겠다는 말씀 그런 겁니다.

○**김예지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다음 소위 때는 꼭 하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서미화 위원** 저한테도 말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31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광석** 3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적으로는 수어통역사 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질적으로는 의료 관련 수어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시각, 발달 등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에게도 발생하는 바 이를 청각과 언어장애 유형으로 제한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장애인으로 대상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역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지원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47개 상급종합병원에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어통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법안에 돼 있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고용을 강제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수어통역사라든지 센터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현 위원님.

○**백종현 위원** 차관님, 올해 기준 전국 종합상급병원에 배치된 수어통역사 수와 일인당 담당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여기 뒤에 어디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뒤에 12쪽, 13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종 전체적으로 보면…… 상종보다는 전체 수어통역사를 쓰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돼 있는 데도 있고 배치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현 위원** 지역별로 의료 통역이 필요한 장애인 수 그리고 활동 중인 수어통역사 수도 파악되어 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백종현 위원** 작년에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어통역이 사라지는 바람에 큰 불편함을 겪었던 장애인들과 수어통역센터 사례를 보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강조하는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건 그렇습니다.

○**백종현 위원** 기준 수어통역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이나 의료 전문 분야 특성화 수어통역사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등 양적 또 질적 보완점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정확한 소통이 필요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복지부가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차관님, 제가 알기로 25년부터 의료기관 내 수어통역사와 코디네이터 등 지원 확대 방향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입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지금 정부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아닙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5개 의료기관 지정해 가지고 수어통역사 한 분하고 진료코디네이터 두 분……

○**김예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사업 한도 안에서 이걸 수정안으로라도 통과는 안 되나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상급종합병원이나……

○**김예지 위원** 근거가 되지 않을 수……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의무화하는 내용이여 가지고 저희는 공모 통해서……

○**김예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노력 조항으로 바꾼다면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들어 보니까, 사실은 지금 5개소에다가 이렇게 우선 지원하고 있고 이것을 29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법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김예지 위원** 근거가 마련돼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는 혹시 그래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법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소위원장 김미애** 5개 병원이 어디 어디인가요?

○**김예지 위원** 빅 5인가요, 혹시 저희가 아는?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장 임현규** 아직 선정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부터 5개소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은데 12·13·14페이지 보면 수어통역 채용한 곳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큰 병원들도 별로 안 돼 있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은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지 결국 장애인 각자가 알아서 지금 하는 걸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렇게 하고 이 법안을 지금 당장 의무규정으로 하기에도 그렇고 또 제재처분까지 따르기 때문에 이대로 하기에는 너무 급격하다,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5개를 하는데 5개 할 때도 전국적으로 고루 하고 그게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을 운영할 때 제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추진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먼저 32항과 33항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은 지난 8월 23일 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다고 보았고.

다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운영자가 위촉하여 구성하게 되는바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권지킴이단 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주체인 시장·군수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그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도 신고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역시 신고의무 부과 시 사업장별 교육 수강 및 결과 제출 등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논점으로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기준을 추가하고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 및 위원 제척 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위원장으로 광역지자체장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지정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8월 23일 날에도 한 번 논의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관련 사항 추가는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신고의무자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인권지킴이단은 사실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고 또 신고의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공기관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으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기준 추가 및 설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 및 위원 제척 규정 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담기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 지침과 또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를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례판정위원회에 일정 직급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경찰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피해회복 지원방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참, 마지막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에 대해서는 정부도 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장애인학대 사건의 신고의무자가 확대돼야 됨은 모두 동의하신다는 의견 주셨고요.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위촉직이라서 종사자와 같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의무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우에 상시종사자 30인 이상 기관에만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복지부에서 제안해 주신 수정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학대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복지시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도로 대응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면서 많은 내용이 수용됐는데요.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소위 이후에 중앙권익옹호기관 그리고 복지부하고 대안 마련 위해서 긴밀히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차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 제가 제안했던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신규 설치 부분은 철회하고 복지부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소위에 논의되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유사한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절차를 대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기능·역할 강화를 통해서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 지침 및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개정을 통해서

첫째, 사례판정위원회에 일정 직급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경찰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2번, 피해회복 지원방안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제안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새로 법안에 설치하자는 말은 철회하고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다음 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34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자립생활 정의 및 자립생활 권리의 신설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보건복지위에 이와 관련 제정안이 2건 회부되어 있으므로 서로 관련돼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체적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의 장 제목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종합계획 수립 의무 그리고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지원 신청, 퇴소, 지역사회 전환지원, 자립생활주택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현행법의 자립생활지원 관련 조치를 변경해서 중증장애인의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구체화하여 이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보건복지위에 제정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으나 자립이 시급한 장애인을 우선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하고 설치·운영 기준, 수행업무 내용,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규정되면서 그 역할이 모호해지게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다음,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말씀 주셨던 장애인복지법하고 다음번에 논의하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에 관한 법률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님·김선민 의원님 발의해 주신 장애인복지법에는 기본적인 자립생활의 정의라든지 또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권리 중심 장애인일자리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또 이게 바로 다음번에 이어질 제정법에 똑같이 이렇게 또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1대에 장애인복지 3법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기본법인데 이걸 전면 개정을 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하고 자립생활지원법이 서로 논의가 됐는데 뒤의 2개는 사실 제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 제정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가 사실은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에 대해서 마지막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법이 안 된 케이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이 다음번에 김예지 의원님·최보윤 의원님 말씀 주셨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에 관한 법률의 기본 토대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서미화·김선민 의원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에 자립생활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 지금 안 나온 것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직은 발의가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논의를 이렇게 쭉 리뷰를 하셨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21대 이야기에 대해서 하시고 뒤에 있는 법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논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논의하면서 뒤에 있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관련 법의 모범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복지법에 자립생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 지원법도 그 내용에 맞춰서 함께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김예지·최보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립지원법안의 자립의 정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도 된다고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자립생활의 정의 및 권리에 대한

정의를 양 법안에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이 법안을 논의하고 뒤에 자립지원 관련 법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특히 54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우리 자립생활센터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김선민 위원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미화 위원 예.

○김선민 위원 하나씩 하나씩 간다면 지난 회기에 논의됐다는 거하고 지금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우선 하나씩 말씀 나누는 게 논의 전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의 같은 거는 같은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있을 주거 전환 혹은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법률에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넣으면 될 건데 안 넣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9쪽을 보시게 되면 서미화·김선민 의원님께서 주셨던 개정안에 장애인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5항입니다. 김예지 의원님 안이, 다음번 논의될 안이 나와 있고요. 최보윤 의원님 안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안이 서로 하나의 라인업이 되고 하나의 일치가 돼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 번에 4조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 조항도 서로 간에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율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지향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구를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문구를 조정해서 같이 담는다 이 말이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미화 위원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2조·4조는 정의하고 권리 규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음 번에 나오는 김예지 의원님 안하고 최보윤 의원님 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의 문구라든지 약간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일치해서 봐야 되지 장애인복지법은 이렇게 하고 또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에 대한 법률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조항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미화 위원 저도 그 말 하는 겁니다.

○김선민 위원 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뒤의 제정법안 2개랑 같이 병행 심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해당 조문만 따로 떼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서미화 위원 이것은 병행 심사할 수 없어요, 내용이 밑으로 가면.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해당 조문을 뒤의 제정안 두 개가, 그 해당 조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있는 것과 유사한 거면 그것만 떼서 지금 심사를 하고 그다음 것

또 심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런데 위원장님, 이 뒤에 있는 일자리 내용이라든지 자립 생활 같은 경우가 사실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의 것하고.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여기서 하나하나 해서 정리를 하기는 오늘은, 아까 문구 하나하나를 정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뒤에 있는 법안하고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상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뷰를 다 하고 그다음, 그다음 것 제정안 두 개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서 그다음 계속 심사를 하기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까지 리뷰를 다 하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보고는 다 해 주셨지요?

○**전문위원 연광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을 끝까지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1항의 장애인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는 약간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권리중심이라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법적 용어로 규정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자립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조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54조의 자립센터에 관한 것이 지난 21대에 나왔던 복지법 개정됐던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는 그런 내용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1대 내에 여러 가지 활동보조를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도 2조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한편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되고 또 예산도 지원받고 관리 감독도 서로 하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4조에 있는 규정이 사실은 58조로 포섭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법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4조가 더 확대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도 지원해야 되고 또 센터 여러 가지 의무라든지 인권교육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선민 위원** 다 끝난 건가요?

○**소위원장 김미애** 이에 대한 위원님들……

그러면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미화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선민 위원** 우선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서 법적인 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국회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다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고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그리고 광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장이 바뀌니까 사회서비스원처럼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법적인 근거, 현재로서 법에 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자체에만

맡겨서 이게 자꾸 사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법률에 넣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게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과 자립생활지원시설 말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서 지금 이미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고 그 센터들은 국가보조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많은 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서 장애인들 입소시켜서 하는 그런 복지시설이 아닌 그런 엔티티(entity)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게 현재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이 있으니 이 법에 담지 않아야 한다거나 혹은 이것과 같이 혼용하면 안 되는 게 법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관련해서도 하위법령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25년 7월에 시행되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이 명칭과 관련해서 변별력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위법령에서 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서미화 위원님 하실 말씀……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말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김미애 예, 서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미화 위원 권리중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차관님.

아까 차관님께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2조 8000억 되는 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하시면서 ‘시설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21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셨었지요?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상임위하고 법사위에서 공히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서미화 위원 차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 말씀, 얘기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당시 소위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활동지원 제공기관하고 동일한 곳으로 주장을 하셨던 발언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가 파악 중인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총 940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그중에서 190개 센터, 약 20% 정도 수준이에요. 20%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조 8000억을 다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말이 되는가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결국 당시 소위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그 대상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능력 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기관, 단체 이런 곳들이 다 지정이 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지시설만 지정 자격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모든 활동지원 기관은 장애인활동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설 및 인

력 기준을 갖춰야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소위에서 논의된,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아무런 자격 기준도 없이 1조, 2조 원을 집행한다는 이런 주장이, 이 또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다양한 설립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으로 국회를 기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시 중대한 사실 왜곡에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단체에서 개정안을 수용한 이유는 법 시행시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의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차관님.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54조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비만 지원받는 센터가 지금 자립생활센터 중에 252개고요. 지금 58조 개정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센터는 겨우 75개예요. 그런데 나머지 172개 센터를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복지부 지원 없이 지역체에서 지방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모든 센터들이 54조에 근거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58조가 신설이 됐는데 54조가 이대로 사문화식으로 묻혀 버리면 나머지 172개 기관이 지역체 지방비에서도 배제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차관님, 이대로 54조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현행법 58조는 미지원센터를 철저히 배제한 악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대부터 법안을 추진해 온 차관님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미루자 이런 말씀보다는 오늘 충분히 논의해서…… 급합니다, 사실 현장의 센터들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58조 신설에 대해서 54조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찬반 논리가 그렇게 치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54조 오늘 충분히 논의해서 어떻게든 꼭, 제가 지금 의무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논의해서라도 54조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법 개정을 이렇게 미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때 58조 개정을 하면서 유효기간을 끊은 뜻을 좀 해아려서 오늘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21대에 정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은 이종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기본적인 개정안의 내용도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법 54조에 근거해서 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54조에 근거하고 있는 254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인활동보조 그것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장애인복지시설 범위 내에 안 들어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종성 의원님이라든지 최혜영 의원님께서 그것을 논의하시면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75개가 법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도 더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또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시설 세금 혜택도 받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저희가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내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두도록 사실은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됐던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저희가 가짜뉴스를 한다라든지 위원님들을 속인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 상임위 논의하고 법사위 논의할 때도 제가 그대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법사위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인 말씀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만큼 충분하게 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세혜택도 받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요.

다만 그때 사실은 58조를 개정을 했을 때 54조가 이게 병렬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최선영 전문위원께서도 그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사실 그게 그때는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래 이것은 그 시행시기가 6개월쯤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1년을 더해서 1년 6개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7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조가 다시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논의를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미화 위원 저기 차관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이번에 예산도 사회복지시설로 영입을 하셨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은 속았다고 할 정도예요. 호봉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예산을 75개소……

○서미화 위원 그거 증액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기준이 되려면 13명 정도가 되었어야 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차관님이 주장한 대로 하셔 버리면, 지금 현재 센터 소장들은 당사자들입니다, 장애인·중증장애인 당사자. 무학력자도 가능하시고요. 검정고시 패스해서 중고등학교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회복지시설 기준 되면요 그분들 소장에서 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1년 반을 받은 거거든요.

○서미화 위원 그리고 들어 보십시오, 차관님.

자립생활센터가 자조적으로 250개까지 설치돼 왔다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은 증명된 거예요. 이제 그 권리를 복지부가 인정을 하셔야지 사회복지시설로 영입해 가지고 시설 기준으로 다 맞추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립생활운동 현장에 현존하는 훨씬 더 많은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가치와 철학과 방향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소위원장 김미애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김예지 위원님이 아까부터……

○김예지 위원 아니, 다 듣고 할게요,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으니까.

○서미화 위원 그러면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성안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 복지부에 수정의견도 드렸고 전달을 했거든요. 어제저녁 내내 했는데 차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지난 회기에 갈등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갈등 요소는 해소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더 많은 센터들이 있다면 그 지역 현장에서의 문제나 반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58조에 들어갔으니 54조의 문제를 이렇게 옥여넣는 거는 그동안 자립생활을 이끌어 왔던 그 운동의 흐름을 이 법으로 막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21대에 그렇게…… 돈의 문제, 물론 돈의 문제가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 돈의 문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거를 예산 활용 그리고 예산 지원의 문제로 환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갈등 구조는 해결을 못 한 채로 마치 돈으로 시설이나 혹은 현장에 있는 장애인센터 혹은 장애인 운동하는 분들을 뛰랄까, 표현이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꾀어 온 것……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 보니까요 제가 드리는 그때 254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종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던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계시던 최혜영 의원님도 같이 논의를 해서 법사위에 가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통과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적인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내용은 뭐냐 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지금 장애인 전체에게 잘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계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다. 그 센터에서 우리 복지부 예산은 1조 5000이 되고 전체는 2조 8000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그만큼 쓰는 것만큼,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만큼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와야 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 되게 되면 그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한 복지 혜택도 주어져야 되고 또 관리 감독도 받아야 된다, 그게 58조에 2가 그때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지 저희가 돈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처음에 아니었었고요. 보조금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 세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당연하게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출발이 됐었고 저도 거기 여러 가지 시설도 가 봤고 그게 맞다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우선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굉장히 동의하고 사실은 저도 54조 개정안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미 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안 했는데.

우선은 지금 이 54조가 21대 국회에 개정이 되면서 시설 쪽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이종성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긴 했지만 이게 의원님의 의견이 아니고 저도 민원을 듣긴 했었는데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대변하고자 발의하신 것임을 다시 정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차관님.

그리고 또한 차관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시설로 들어간다고 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 정신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권리옹호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그 철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 철학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만 시설로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몇몇 IL센터들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고자 한다는 혹시 단체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제가 단체에, 이룸센터도 가 보고 여러 가지 또 혜화동도 가 보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들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뭔가 오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정에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추진했던 IL센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IL 정신을 훼손시키는 행위처럼 약간 비쳐지는 것 같아서 저는 몹시 우려가 되고요.

그분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계시다는 말씀, 이게 자칫 잘 모르시는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 오해가 될까 봐 저는 몹시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차관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이게 안착이 되어야 마땅한 거기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근거에 기반을 해서 내년도, 내년도가 아니겠지요. 후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지금 예산은 75개인가 있었고요……

○김예지 위원 기준에 하시던 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서미화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25개에서 100개가 반영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정 후의 것이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아직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러니까……

○김예지 위원 이전대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7월 달 되는 걸로 25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이미 그때 만들어져야 되니까 예산은 내후년 2026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25년도에도 지금 일부가 반영돼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일부가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25개가 반영돼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25개는 어떤 근거로 마련하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니까 75개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옛날에 이백 한 오십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금 먼저 갖추는 곳부터 예산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개 정도는 7월 달부터 지원을 하고……

○김예지 위원 갖추는 근거는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근거는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을 여러 시설 인력 기준이라

든지 그런 걸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예지 위원 그런데 거기 25개소가 지금 시행령이 준비 중인데 마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산에 지금 신청을 했다……

○김예지 위원 신청을 해서? 통과는 아직 모르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김예지 위원 그런데 그게 정부안에 들어온 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시행령이 지금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정부안에서는 잘 안 담아 줍니다.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김예지 위원 그래서 그나마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에 온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쨌든 시행령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봐 가면서 기존에 시설로 편입되기를 원하셨던 IL센터들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다른 나머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IL센터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그 내용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에서 반영을 하실 예정이 있으셨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예지 위원 저는 그 의견수렴 과정이 지금 누락되고 또 이게 법안이 개정이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추진하려고 하던 그 방향이 훼손될 것 같아서 우선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저만의 우려는 아니고요 IL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서미화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 반해서 누락되거나 아예 배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여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있던 센터가 배제되거나 지방비를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일은 현재로서 있을 가능성성이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시행령 개정 전까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받던 것은 받게 됩니다.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저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제 진짜 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내용을 또 전드린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54조에 자립생활센터로 해서 자립생활지원센터, 그 시설로 들어간 곳과는 아예 명칭을 달리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로 편입하고자 원하셨던 IL센터 소장님들 또한 자립생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립정신 IL센터 운영하시는 소장님들의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활동가분들의 그런 IL 정신의 훼손이, 시설로 편입됐다고 해서 나는 자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보면 정부에 귀속되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하신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오해될 것 같아서 만약에 개정이 되더라도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것이 그 시설을 원하셨던 분들의 그 자립정신이 훼손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안 전드렸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차관님, 제 법안이 58조 건드리는 거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54조하고 그 4조의 1, 2로 나눠지는 겁니다.

○**서미화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58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는 시설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렇지요?

자, 이 58조가 신설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는 시설 기준을 맞춰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시설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장애인복지시설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서미화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장애인복지시설.

○**서미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이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철학과 가치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은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훼손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성에. 그리고 분명히 그때 장애인단체들 의견을 다 받아서 이종성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때 극명하게 반대하는 그 장애인단체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서미화 위원** 그 합의 해 갖고 이게 개정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서미화 위원** 아니, 대답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법 자체가……

○**서미화 위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요.

○**소위원장 김미애** 잠깐만요, 서미화 위원님.

○**서미화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견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그래서 저는 제 개정안 내용에 이 58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당시 58조 개정 신설을 찬성했던 곳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한 대로 54조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지원을 받고 시설화될 수 있는 센터는 그대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렇게 하시고 54조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좀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 의무, 설치기준 이런 것들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복지부에서 지금 강행규정으로 수용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임의규정으로 수정 수용을 할 의향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부터 4항까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좀 수정하신다고 해도 제가 수용할 의사 있고요.

그다음에 제1항의 마지막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해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제3항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의 ‘시·군·구 1개소에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업무 중에 2호 민주 시민 역량 증진, 일자리 개발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하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지부 의견 주신 것 처럼 제6항 전체 삭제하고요. 7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1항 및 5항에 따른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제정에 동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54조 안이 수정이 되면 그 이후 내용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선민 위원님 의견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런데 58조에서 이 시설의 이름, 명칭을 다르게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54조를 바꾸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복지시설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여러 이유로 복지시설로 가지 못하거나 가지 않겠다고 하는 기관들은 54조의 조항을 받아서…… 하지만 이게 그럴수록 더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름이 조금 달라졌지만 다른 게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해서 54조의 조항은 그것대로 하고 그다음에 58조는 58조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로 가고 싶어 하는 기관들은 가도록 하고.

이런 나머지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시행령이 제정되고 25년 7월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최소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항의 2의2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53조의 장애인 생활지원 그리고 54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규정돼 있는 게 포함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지난번 법 개정안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 54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그때 개정안이었고 그 개정안이 통과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관련 규정을 왜 같이 검토를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래서 그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현행법 54조도 남아 있고 58조 2의2 같은 경우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달리 말하면 사실은 58조 2에 54조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명쾌하게 안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인 그때 개정안의 내용은 충분하게, 정부의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을 통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그 당시의 취지는 58조 안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한 거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 취지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관리 감독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시설로서 회계감사도 받고 예산도 지원받는 것이 법안의 취지였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현행 그대로 54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안 된 상황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은 그 법 시행시기가 내년도 7월 달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7월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7월 이후에는 사실은 법정신에 따르면 이게……

○**소위원장 김미애**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도 그때 법에 논의했던 254개의 시설이 있고 이것은 활동보조를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900여 개의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설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게 좀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때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미화 위원** 지금 모든 기관…… 잠깐만, 위원장님 확인할게요.

차관님, 254개가 다 활동지원기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때 논의했던 기관은 254개였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 기관이 다 활동지원기관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이에요? 사실 확인할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때 논의했던 것은 254개였었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때 논의한 것이 254개였고 그 당시 254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들이 다 활동지원기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때 대상이 되는 자립생활지원센터는 254개로 저희가 보고 논의가 된 겁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니까 254개가 다 활동지원기관 하고 있다 이 말씀 하신 거지요. 지금 금방 그때 그렇게 말씀했다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걸 그렇게 확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때 논의했던 기관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미화 위원** 아니, 그때 논의했던 기관이 254개라면서요?

○**소위원장 김미애** 잠깐만요. 계속 이렇게 해서는 심사를 효율적으로……

○**서미화 위원**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확인 좀……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이것은 조금 보류해서 그 다음 것 제정안 2개 리뷰를 하고 나서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공통 취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전달체계 및 서비스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통합·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입법조사처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했고 그 내용이 18페이지 이하에 소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탈시설은 차별금지, 즉 평등권에 기반한 관점이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점은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이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탈시설은 권리이고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설장애인은 이미 노령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하며 중증·복합장애가 다수다. 거주시설에 있는 시설장애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은 98.3%, 빨달장애 80.1%가 대부분이다. 그다음에 나가고 싶다는 의사는 33.5%, 그렇지 않다 59.2%라는 것 그리고 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불투명성,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탈시설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방식이므로 돌봄서비스의 책임 소재 불분명하다 등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보다는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김예지 의원안과 최보윤 의원안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을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므로 검토는 다음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보호에 대해서 김예지 의원안에서는 제7조에서 의료적 필요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소위원장 김미애 그렇게 하실 때도 몇 조 몇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연광석 예,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자립지원 실태조사로서 양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중앙 및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고 37페이지에서는 중앙 및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에서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로서 양 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김예지 의원안) 또는 시장 등(최보윤 의원안)이 지방센터에 의뢰하여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입니다.

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양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주택을 운영 또는 제공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 등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장애인자립친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거주시설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예지 의원안에서는 거주시설의 장이 거주시설 전환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전환 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내용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전반적으로 봤는데 오늘 당장 이걸 심사를 해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기초 정보부터 우리 위원님들께 충실히 제공해 주십시오. 지난번의 그 논의 배경은 뭔지, 어떻게 되었고, 취지하고 그다음에 현재 쟁점 되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부처에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하시고 다시 리뷰하자고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의견은 이것 계속 심의로 넘기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미애** 오늘 이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심사해 가지고 결론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랑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음 번에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이 가는데, 서미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하고 했는데 저도 충분히 아직 이해를 다 못 했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서미화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부 측하고 어젯밤까지도 계속 수정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회를 해 가지고 앞에 아까 리뷰하자고 했던 법안을 좀 정리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정회를 통해서 정부 측하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미애** 서미화 위원님 뜻도 존중하는데 제가 진행상 오늘 법률안 심사할 것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양해드립니다.

김예지 위원님, 계속 심사하는 데 좀 양해를 해 주실 겁니까?

○**김예지 위원** 제 법안이 꺼 있어서 제 의견 물어보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미애** 예.

○**김예지 위원** 저는 우선은 동의는 하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연관성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중의 하나는 권리보장법입니다. 권리보장법과 그 안에 자립지원이라든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법안들, 그러니까 그게 원래 21대는 장애인 3법으로 불렸습니다만 저는 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된 법안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소위를 혹시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되시면…… 타 법안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랑 하다 보면 사실 계속 계속 밀리고 밀리고 그래서 또 폐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발의한 만큼, 오늘은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하니 타 법안으로 넘어가고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저희 장애인 관련 이슈들을 좀 모아서……

그리고 지금 심사 검토보고 의견도 제 거랑 최보윤 의원님 거랑 구분도 안 하시고 그

냥 막 읽으시던데 그렇게 말고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예를 들어 제 거는 지금 장이 6개고 39조가 있고 그런데 최보윤 의원안 것은 장도 없고 그냥 있는데 이런 차이점도 다 말씀 안 해 주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선 검토보고 의견도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고, 저도 부처 간 의견을 교류를 할 테니 법안소위에서 이것만 좀 다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미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오랜 기간 준비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 정도로 심사하려면 사실은 좀 더 논의를 숙성하고 여기에 와야 되고 또 한두 번에 깊이 있는 법들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게 원래 21대 국회부터 넘어온 거라서……

**○소위원장 김미애** 그렇기는 한데 제가 21대 때 한 것도 20년에 해서 23년 10월에 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알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죄송한데요, 자꾸 말씀드려서. 3362호 김선민 의원님하고 공동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그러면 제일 뒤로 좀 미뤄 가지고, 제가 그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정부하고 좀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만큼 해 보겠는데 오늘도 한 6시면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4건의 개정안은 모두 현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분할연금 적용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현법재판소는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현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분할연금 수급권 판단 시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였고 이는 법률 제15267호로 공포되어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각 개정안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법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 이외에 신법 조항의 적용 대상자 및 급여분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법 조항의 적용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같은 기간 중 발생하였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비추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룰 수 없으므로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법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법 조항의 적용 급여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현재 아직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이미 지급된 분할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의 급여분에 대하여 신법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헌법 제13조 2항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고 2024년 5월 30일 이후의 급여분에 대하여는 신법 조항을 적용하라는 것이 현재의 결정 취지이므로 2018년 6월 2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의 급여분에 대하여 신법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를 쟁점 사항인데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2019헌가29 결정일 전날까지의 급여분에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기지급된 분할연금 급여를 환수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등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고 분할연금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정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관 소관 법률안을 마쳐야 되는데 아까 그거 서미화 위원님, 다음에 밖에서 논의했다가 그때 계속 심사하도록 합시다. 1차관은 끝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2차관을 시작해야 되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다음 소위는 언제 열려요? 아니, 현장은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하거든요.

○**소위원장 김미애** 예, 빨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올 안에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소위원장 김미애** 올해 안에? 의논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의논해서 올해 안에 열어 주시고 그때 꼭 상정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27번 안건, 이수진 의원님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요. 아까 논의할 때 1항·2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동의하고 3항·4항은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계속 심사로 넘겨서, 지금 1·2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동의했으니 여기 이 부분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소위원장 김미애** 그렇게 잘라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다음에 해서 계속 심사를 해야……

○**김남희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소위원장 김미애** 그거는 의논해서 다음 기회에 철회를 한다는 의견을 주시든지……

○**김남희 위원** 철회를 하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미애** 아, 3·4항은?

○**김남희 위원** 예, 3·4항은 철회하고 1·2항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이신……

○**소위원장 김미애** 의사일정 제34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7항에 대해서 다음에 합시다,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다음에 다른 말씀 하시면 곤란하다.

일단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미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소위원장 김미애** 예.

○**강선우 위원** 저희 아까 심사했던 27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발의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정부가 수용이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신중검토여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하기로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수진 의원실에서 정부가 신중검토인 그 두 가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철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철회를 한 경우에는 앞의 두 가지를 26번이랑 같이 해 가지고 대안 반영 폐기 이렇게 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김미애**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두 제정안 중 김미애 의원안은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원 등에 관하여 복지부가 재정 당국과 추가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김윤 의원안 상정 이후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하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건의 제정안들은 필수의료 육성 및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김미애 의원안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안은 권역별·지역별 책임·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의료 지역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사제 및 지역·필수의료수가 도입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며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의료·지역의료 및 진료권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의 경우 그 범위 및 개념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의료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사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김미애 의원안은 의사와 시·도지사 간 자발적 계약과 이에 따른 각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김윤 의원안은 10년간의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가 전제되지 않은 지역의사양성제도는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지역의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역거점병원 또는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입니다.

김미애 의원안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목적 및 역할·기능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역의료전달체계하에서 지역거점병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김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중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역할과 별개로 이 법에서 별도의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입니다.

○**강선우 위원**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미애** 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페이지 7쪽이요.

김미애 의원안의 경우 자체 재원이 거의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의원안의 경우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되고 나머지 부분의 19.24%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5%를 지역·필수의료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총괄 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두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우선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받으신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 좀 상이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김미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용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이나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원과 관련된 기재부와의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김미애 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용 의견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 의원안은 김미애 의원안과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진료권 개념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진료권별로 대·중·소 이렇게 해서 책임 또는 거점 병원을 지정을 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가 또 서로 있는데요. 먼저 진료권 개념과 관련해서는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지금 응급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권역을 분리를 해서 그 권역에 맞게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진료권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책임기관이나 거점기관을 지정할 때 이 기관들에 각각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가 실제 행정 집행상 매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공공의료법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공의료법에서는 우선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민간기관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역할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주로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간에 협의하는,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깨까지 해서 총 90% 가까운 기관이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 사업안에 보면 협력기관을 서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급 병원하고의 협력병원을 서로 매칭을 해서 짜고 그 병원 간에 환자 이·전원에 대해서 신속한 협력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또 상당한 부분의 사후평가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 이후에 지금 법에서 취지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윤 의원안에서 제안하시는 이런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은 현장의 시범 사업 진행 결과들을 좀 지켜보고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추가 논의를 더 거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미애 의원안에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기본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동의 말씀 드리고요.

다만 김윤 의원안에서 하시는 의무복무형 지역의사제는 타 법에서도 지금 지역의사제 법이 제안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의료계의 반발이 좀 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선발 단계로부터 이 지역의사제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학생을 선발을 해서 별도로 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기존 의대의 정원의 일부를 이런 지역의사 학생으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겠는데 두 가지 방식 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서 심사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게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의료계 의견을 듣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이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항부터 12페이지의 더항까지가 의료계의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보다 더할 수도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김미애** 이 안에는 환자단체 의견도 있어야 되는데 환자단체의 의견은 여기에는 없네요.

그래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안심사를 할 때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의 정협의체가 출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계나 야당이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계가, 일부는 참여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을 해야지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정리를 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소위원장 김미애** 이 정리를 하실 때 각 단체 의견인 것을 가지고 요약한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소위원장 김미애** 이것도 한번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아, 지금요?

○**소위원장 김미애**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저희가 요약은 했지만 깊게 온 것은 거의 원문 그대로 실은 부분도 있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복지부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8쪽입니다.

기재부는 제정안의 권역별·지역별 책임·거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현재 유사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복 소지가 있고 특수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윤 의원안에서는 이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김미애 의원안에 대한 의견은 지역필수의사 지원 주체로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도 명시하고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의도 계약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역필수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라번,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김미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기금 용도에 의학교육 관련 기관과 예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지역필수의사 지원 및 계약 미이행 시 환수 조치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의료계와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책임의료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지역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관리하에 운영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이미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마, 대한의사협회 의견은요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만 제시가 돼 있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봉과위기에 처한 필수·지역 의료 분야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제정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조항 등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같은 규제 사항들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여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인력·적정보상 등을 아우르는 필수·지역 의료 현안 관련 심층 검토 중인 상황이므로 해당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 현실을 반영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의견은요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 필수의료 정의에 ‘중환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과연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소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과연 소아와 연관된 모든 진료가 ‘생명과 직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아, 저희가 온 것을 거의…… 문맥이 이상한 것은 그대로 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의견은요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 대진료권별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과 역할에 대한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함. 다만, ‘중증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들의 진료 과정도 해당 진료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의사제도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제도이므로 도입에 대해 반대함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입니다.

김미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정의 규정은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세울 경우 필수의료 봉과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며 지역거점병원 지정 요건 등이 모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는 이미 봉과된 상태이므로 필수의료에 관한 특별법은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적 필수의료에 대한 조사 후 필수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특별 대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즉 지역완결성이라는 목적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재 필수의료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달성 불가능하므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쪽.

대한응급의학회 의견은요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만 제시를 했는데요. 책임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 지정 관련 현행 법률상 상급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한감염학회는 필수의료의 구체적 정의는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합의체가 정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용어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거치고 의료계 전문가 단체와 복지부 합의체를 거쳐 확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김미애 의원안의 지역필수의사 계약기간을 줄이고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김윤 의원안에 대해 진료권 관련 의료구역을 획일화시켜 국가기관·시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적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않고 단순히 책임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대한안과학회는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 권역책임의료기관 교수의 네트워크 내 타 의료기관 파견은 해당 의료기관의 수련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대한비뇨의학회 의견은 제정안들에 대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교육과 실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단체 및 의사들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대한재활의학회는 제정안들에서 필수의료·진료권 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원제도들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의료취약지병원협회는 김윤 의원안에 대한 의견에서 현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취약한 상황으로 현 정부에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한계점이 있으며 현재 관련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통합적이고 완결적인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제정안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약자들도 국민으로서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과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투입 계획 등을 담은 필수의료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분절적·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총괄적인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가 개별 조문을 전체를 한번 리뷰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게 조문을 쭉 보셔도 되고요. 내용이 보면 크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제로 놓고 각 두 안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찬반 토의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제정법인데 공식적인 어떤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서면으로만 의견을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의료계의

조금 더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하고요. 어차피 의료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거쳐 가지고 법을 성숙시킨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저도 차관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거는 지금 민감한 시기에, 물론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법률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는 의료 관련된 이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뭔가 우리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필수의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개념이 좀 혼합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의료계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공통적인 것들이 정의가 모호하다 그리고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라는 게 아주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물론 정의가 어렵다라는 게 의료계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의료서비스, 의료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상황에 병목을 갖는 그 현상은 비슷하지만 지역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 분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수가이기도 하고 소아과는 수가와 또 인구집단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혹은 질병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서 도시에서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 이를 구분해야 하냐 하면 지역에서 그런 경우하고 어떤 특별한 영역이나 혹은 진료과에서 그런 경우는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거는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지불보상체계를 바꿔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동상이몽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의사들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배워 온 과학체계에서 나는 이것 도대체 나의 의사 지식 체계에서 정의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어서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고혈압 관리도 필수의료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수술하는 것도 필수의료고, 그게 수술이 됐든 시술이 됐든.

그런데 그 의학 지식 체계에서 보면 어떤 게 필수고 어떤 게 비필수야 이를 정의하는 것은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잡아야 하는 문제가 수가나 전국 단위의 정책의 문제인지를 좀 구분해 놓고 이번 법을, 김미애 의원님 안이든 김윤 의원

님 안이든 그거를 아이덴티파이(identify)해 놓고 접근을 해야지 서로 얘기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혼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론은 공청회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공청회를 많이 해도 그 공청회 자체가 뭐랄까, 서로 각자의 코끼리를 만지는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쯤은 우리 복지위나 소위에서는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문제의 아이덴티파이를 한번 제대로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필수의료라는 건 어차피 국가마다 정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국가가 정하면 되고, 김미애 의원님 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굉장히 넓게 잡으면서 거기서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의들을 좀 더 공론화해서 갖고 갈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거를 정한다면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를 어떻게 하면 더 수용성 있게 공급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받아들일 만하고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라고 여겨야 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입장을 저는 들어야 될 것 같다.

물론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이것은 한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국가에 처한 현상에 따라서 다르고 필수의료도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 수든 여러 가지 가치든 공동체의식이든 저는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지역의료에 있어서 지역의료 붕괴도 대도시라고 해서 지역의료가 완결성이 높은 것도 아닌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광역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기도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마냥 계속 손 놓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니까 오늘은 수석전문위원께서 13페이지부터 해서 대충 목적·정의 규정에 뭐가 있고 또 비슷한 것 또 확연히 다른 것 그런 것들을 1조부터 속도를 내서 한 번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소위 위원님들도 대충 이 법안이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파악이 되실 테고 그리고 나서 저는 실제 의료계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공청회든 뭐 어떤 형식이든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소외되지 않게 그 의견이 반영되어어서…… 그럴 때만이 비로소 법의 완성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현장에서 추후에 참여할 때 참여율도 저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박희승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법안이 지금 보니까 많이 서로 팽팽하게 견해가 달라서 저도 청문회 하는 데 동의하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문 하나씩 다 설명을 듣는 것은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청문회를 우리 소위에서 할지 보건복지위 전체에서 할지 그 정도 선에서 정해 주시고 그냥 다음에 청문회로 넘기는 게 어떨까요?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소위원장 김미애** 그래도 그것 하는 데 속도……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이렇게 독회를 하는 게 제가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파악을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얘기를 여기서 다 같이 들으면서 다 같은 속도로 이 법안을 짹 다고 스루(go through)하면 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자 위원님들께서 각자 스터디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터디해서 이거를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기 전까지, 보시면 각계 의견을 들은 것을 보면, 물론 거기서 의견을 보내 줘야지 여기에 같이 실릴 텐데 보내지 않은 곳들도 최대한 포괄적으로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좀 의견을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산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차례 의견을 좀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료계에서 학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보냈는데 환자단체나 아니면 소비자 쪽은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 취합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취합하고 이것을 다음에 논의할 스케줄을 잡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부처와도 함께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각 당에 있는 전문위원들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안건 상정만 하고 제대로 전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인데 김윤 의원안하고 같이 병합 심사를 하는데 아까 총론적인 말씀만 들었는데 그래도 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도, 그 리뷰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의사제도 계약형인지 그냥 지역 의사제인지 뭐 이런 차이 그런 것들을 좀…… 한 20분 이내로는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두 번이나 하면서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1조부터, 옆에 제목이 있잖아요, 타이틀이 있지요. 타이틀별로라도 좀 보시고 또 위원님들도 속도감 있게 눈으로 읽고, 전문위원은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몇 조부터 몇 조까지 그렇다, 결국은 법체계도 한번 훑어보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한 20분 정도 시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 시간 최대한 지켜 가지고 그때까지 만약에 다 못 본다 해도 거기에서 좀 멈추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17페이지부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 21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쉬지 않고 쭉 끝까지 할까요?

○소위원장 김미애 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먼저 13쪽, 필수의료 등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정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김미애 의원안은 필수의료를 다소 넓게 설정을 하면서……

○소위원장 김미애 이거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넘어갈까요?

○소위원장 김미애 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4쪽도 김윤 의원안은 진료권을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의견 있었고요.

21쪽입니다.

제정안들은 필수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의료 관계법에 따른 계획 수립들이 있는데 그거랑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지와 별도로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이거는 총론 때 많이 말씀하셨던 지역의사 양성 관련된 건데요. 계약형 필수의사제 관련해서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윤 의원안의 의무복무 전제 지역의사제의 경우에는 수도권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또 의대가 없는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위현 여부, 의협이나 의사단체에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관련 판례나 의견들 제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거점병원 지정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등 지정입니다.

이 부분도 총론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과 권역·지역 거점의료기관 간의 역할 구분이 이 법률안 상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역할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인력 및 교수를 해당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로부터 반대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부여하려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에서는 수가에 대한 정의 없이 ‘지역·필수의료수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가’라는 용어가 법률에서 정의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의 용어라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서 사용하려면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8쪽입니다. 필수의료특별회계는 총론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72쪽의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도 총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83쪽인데요. 부칙에 지금 시행일만 되어 있는데 김윤 의원안과 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하는 것을 내용을 넣으려면 몇 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할지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1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탁월하신데……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도 차관님, 방금 보고한 것 위주로, 아까 총론 부분에서 대부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우선 정의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의료의 정의는 정책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사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얼마만큼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가에 따라 그 지원의 강도나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김미애 의원안이 그런 것을 감안하여 장관이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책과 관련해서 각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단위나 이런 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위원회를 두도록 그리고 평가를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두 법안에 쭉 혼재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물론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조문 안에 약간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필수의사제 내용이……

○소위원장 김미애 페이지랑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소위원장 김미애 3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다음에 지역의사 양성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김미애 의원안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윤 의원안은 의무형 지역의사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형 지역의사제는 의료계 내에 굉장히 반론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많은 토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약형은 그야말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에 계신 의사가 계약을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법이 없어도 저희가 진행 가능하고 예산안 심의하실 때 아마 보셨겠지만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몇 개 지역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 보완할 사항도 찾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조금 더 다듬은 다음에 법정 제도화돼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러한 입장을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김미애 의원안의 계약형 필수의사제가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위원장 김미애** 49페이지, 지역거점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역거점병원과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해당 지역에 거점병원 또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어떤 책임과 역할을 구분,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현장에서의 상황을 보고 법제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공공의료법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런 기관을 지정하자고 하는 근본 취지는 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서 대형병원 그다음에 중소병원 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환자를 좀 나눠서 본 다음에 필요한 협력들을 하자 이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정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상황이 매우 상이해서 이렇게 일률적인 틀로 지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지금 지원한 상급병원들은 지역에 있는 2차 병원들하고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팀워크가 발휘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구현되는 것도 평가도 해 보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법제도화해도 좋겠다.

그래서 지금 거점병원이나 책임기관 지정하는 이 부분은 두 안 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을 더 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장 김미애** 재원에 대해서 말씀 간략히 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그다음에 65쪽의 김윤 의원안이 수가 가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역 가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처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분만에 대한 지역 가산을 했더니 인천광역시에서 굉장히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광역시는 그래도 큰 도시다 이렇게 해서 가산을 조금만 드리는 형태로 했더니 인천 안에 또 의료취약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못 받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다 보니까 가산을 좀 많이 드리는 그룹으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는 웬만한 또 서울보다도 더 여건이 좋았다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만 갖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현장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의료지도라는 것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적인 의료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권역을 분류하도록 했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지역 가산은 저희가 조금 더 정치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만을 시작으로 했지만 꼭 분만에 한정되지 않고 아까 지역 수요가 부족한

소아과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확산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오류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을 보고 나서 법제도화를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공감합니다마는 당장 법문 안에 넣기보다는 그런 시범사업 내지는 지역 가산이 확산되는 결과를 놓고 추후에 제도화를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9쪽 이하가 특별회계나 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구체적인 세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재원으로 하는 구체적 안을 정리를 했고 사실은 이 모든 법안의 내용 중에, 내년도의 예산안을 보시면 지난번에 의결해 주셔 가지고 필수의료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부 거랑 교육부 거랑 합해서 한 2조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특별회계 그다음에 지역기금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좋겠다.

사실은 이게 먼저 실무적으로는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거랑 엇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것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기금하고 특별회계 근거 규정만이라도 먼저 통과를 시켜 주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담아 가지고 추후에도 확보해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들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번 리뷰를 했는데 추가로 의료계나 환자단체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제42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청문회를 여는 게 아니고 심사로.....

○**소위원장 김미애** 아니, 공청회를 할지 청문회를 할지 그것은 제가 강선우 간사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광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박희승 의원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 전반에 대한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하여도 의대생, 의전원생의 지원 신청이 저조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에 해당하는 의무복무 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조문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명, 목적, 정의와 관련해서 김문수 의원안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을 설립 또는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잠깐만요.

이게 제정안이잖아요. 총론적인 부분의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그렇게 심사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이게 2건의 법안입니다. 박희승 의원안하고 김문수 의원안인데요. 박희승 의원안은 예전에 21대 때도 여러 차례 다루었던 그 내용의 공공의대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의원안은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새롭게 하시는 건데요.

우선은 이 부분도, 공공의대법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취약한 지역의료를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의식 때문에 정부도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했고 그 내용의 주요 내용 중에 지역의료 활성화 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필요한 예산과 그다음에 수가 제도 개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종 구조전환 사업도 사실은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공공의대법이나 이런 것들은 의대 증원 못지않게 의료계에서 반감이 매우 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은 말씀드리고요.

김문수 의원안은 기준 것하고 조금 내용이 상이한 게 있는데 박희승 의원안은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김문수 의원안은 기준 의대에 지정을 해서, 국립대에다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의원안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김윤 의원안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정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의대생들 전체가 다 지역의사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가는 것인지, 그러면 일부만 간다고 할 때는 전국구 학생하고 지역구 학생이 나뉘지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은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무복무나 10년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면서 좀 더 많은 논의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것도 타 부처와 의사 관련 단체 의견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걸 좀 요약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예, 8페이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김문수 의원안에 대해서 국립대병원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 필요성, 재정여건,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부속병원 설립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사 관련 단체에서는 박희승 의원안과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지역 의료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장래인구 추계, 의료공급체계,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하에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기존 전문의 배치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공·지역 의대 설립 등 법률 안 추진은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 갈등 상황 악화 및 사회적 혼란 예상되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고.

의사 관련 단체에서 김문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2~5년간 의무복무하는 현행 공중보건 장학제도도 지원자가 적은데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한 부속병원 없이 지방의료원 등을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면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 행정구역상, 이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김문수 의원안과 관련해서 ‘한의학대학을 포함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한간호학회에서는 김문수 의원안에 대해서 현재와 달리 간호대학은 배제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것도 아까 앞서서 심사 때 했던 것처럼 필수의료 관련법 제정안에 대한 것처럼 속도감 있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연광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명·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김문수 의원안에서 간호대학 학생은 제외된다는 것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인력……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법적 구성에 대해서 박희승 의원안은 법인으로 하고 김문수 의원안은 법인·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존 국립대를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인데 박희승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신설은 의료 정책과 연관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김문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을 공공의과대학으로 지정할 경우 대학의 결정권이,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전라남도는 역시 의과대학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8조부터 16조까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총장 선출, 이사회 구성, 교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토로서는 총장 선출방식의 경우는 국립 대학·공립대학 또는 카이스트(KAIST)나 유니스트(UNIST) 등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두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모든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총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학·대학원,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박희승 의원안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 형태를 규정하고 있고 김문수 의원안은 의과대학 지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에서는 박희승 의원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60%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김문수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특히 60% 이상 선발이라는 규정은 자체가 설립한 의과대학과 달리 국가가 설립한 의과대학에서는 단지 소재지만으로 60%를 선발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비 등의 지원 및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두 10년 근무를 조건으로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학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희승 의원안과 관련해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의사면허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비 반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문수 의원안에서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납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교육·실습 기관, 부속병원과 관련해서 박희승 의원안에서는 지역 내에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부속병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가 아닌 자체가 의과대학을 설립한 경우 부속병원 설립에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은 공통적으로 10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허 취소는 약간 다시, 취소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제재 수단으로써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양 안 모두 공통적인데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표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10년 이행을 완료해야 의사면허가 부여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현행 의료법 11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3년 이내에는 특정 업무·특정 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행법을 따른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그럴 경우에는 의료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정부 측 의견도 간략히 아까 총론 한 의견과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제가 총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명, 목적, 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지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이것도……

○**강선우 위원** 잘 안 들려요.

○**소위원장 김미애** 차관님,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소위에서 심사해서 결론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청회든 청문회든 거쳐서 이해관계인, 그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강선우 간사님과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선민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소위원장 김미애 김선민 위원님.

○김선민 위원 그런데 정부의 의견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논의한 필수의료 강화에 관한 법,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이게 다 연동되는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약형 필수의료제도를 예산을 논의할 때 그렇다면 지역의사제는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뉘앙스로는 이거는 안 하겠다로 들리거든요. 법도 논의가 안 됐는데 복지부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는, 이 앞의 필수의료하고 다 연동되는 일인 것 같아서.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뒷하기는 하지만 지금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큰 어려운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역사상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는 제도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좀 열어 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딱 정해 놓고 이거는 안 되고…… 물론 굉장히 어렵거나 어렵거나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의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시고 강선우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순서로 발언하십시오.

○한지아 위원 저희가 법을 진행할 때 너무나도 공급자만 생각을 할 수 없고 물론 또 수요자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공급자 측에서 강한 반대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아마 저희는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고려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회적 합의,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가 반드시 반대한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 60% 이상 선발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국가가 설립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단지 소재지 때문에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얘기했듯이 의과대학이 개별 지역상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

그리고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취소나 또는 10년 복무 기간에 대한 그런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는 현재로서는 크게 지원율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확인이 되고 내용들이 정교하게 반영이 돼야지만 이런 법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부분도 우려가 되지만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 다 정교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소위원장 김미애 강선우 위원님.

○강선우 위원 지난해 법안소위 당시에 박민수 차관님 발언하셨던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우선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적인 규모 결정을 먼저 하고자 하고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인력 증원과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필수의료 정책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공공의대 설립은 저는 구체적인 배분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십사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즉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참여한 공청회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셔 놓고 방금 우리가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고 할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드는 예인 법안 제명 관련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입장을 정리를 안 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답변드립니다까?

○강선우 위원 그렇지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입장을 정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증원과 함께 저희가 그래서……

○강선우 위원 지난해 12월부터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강선우 위원 그러면 의대 정원 증원은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강선우 위원 논의하자고 차관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고 준비를 해 오셨어야지요, 지금. 법안소위 열 것 뻔히 알고 이거 의사일정으로 올라오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말씀, 답변……

○소위원장 김미애 말씀하실래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강선우 위원 아니요.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강선우 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박희승 위원님 발언하시고 한지아 위원님.

○박희승 위원 사실은 21대 때 국회에서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올라갔던 법안입니다. 지금 다시 청문회 말씀도 나오시는데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했다는 것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때는 의사를 한 명도 증원시킬 수 없다는 전제가 더 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현 정부에서 지금 의사 수를 증원하기로, 물론 그로 인해서 의료대란도 일어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는 차원에서도 이 법안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아마 예산도 책정했던 기억도 나고 다만 그때도 법안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미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때 남원의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그때 당시에 서남대 의대 폐교 티오 49명을 가지고 공공의대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의료계의 반대가 심했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반대도 심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의사 수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이제 의사 수를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지역의사 부족한 부분, 필수의료 부분 계속 강조하시고 또 현재 지금 시급한 게, 지금 군의관 갈 자원도 부족해지는 게 현실이고 면 단위에 있는 공중보건의도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사병들 복무기간이 짧아지니까 지금 의대 졸업한 사람들이 군의관으로 안 가고 일반 사병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하는 의사가 있어야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정부 시책을 가만히 들어 보면 낙수효과를 노려서 의대를 많이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지역에 정착을 할 거고 돈을 많이 주면 필수의료도 많이 갈 거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의사들 이야기 들어 보면 결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느냐?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만 의사가 몰려 있지 지방에 가면 정말 소아과, 산부인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를 모집하려면 정말 3억, 4억, 5억까지 줄도 안 온다는 형식인데, 물론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주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지금 지역의사·공공의사 해서 의무복무 제가 알기로 9년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도서·산간벽지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의대에서 커리큘럼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해서 여름방학 때는 공부보다는 자기가 근무할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도 친해지고 또 의대 졸업하고 거기 가서 9년 의무복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는답니다. 그런 성공 사례들이 일본에서도 있는데 그런 걸 벤치마킹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많이 뽑으면 낙수효과로 지방에 많이 남을 것이다, 계약을 하면 의사들이 남아서…… 지금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지금 가능성이 않은데 자꾸 정부 정책을 그쪽으로 정해 놓고 끌고 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차관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의료법하고 지역의사제법의 문제의식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21대 때 총량적인 증원, 확대 후에 추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는 낙수효과라기보다는 자발성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때 유효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사적으로 의료계에 의견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오히려 의대 증원은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이

공공의대에 관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지역의사제하고.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가 400명 증원 추진했고 동시에 또 공공의대법이 추진이 되면서, 그때도 400명 증원안을 내밀었을 때 전공의들이 다 이탈을 했었었거든요. 물론 한 달 만에 사태가 종결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기 이탈은 아닌데 그 400명을 했을 때도 이렇게 이탈을 했고, 그래서 이 400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탈하느냐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은 그거보다 공공의대 이게 더 문제다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법안 논의하는 것도 증원을 먼저 좀 하고 그리고 공공의대는 충분히 좀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도 의견은, 김선민 위원님께서 우리가 안 하려는 것이냐 했는데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은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원을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만약에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장기화된 과정을 조금 마무리 짓고 복귀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더 의견을 듣도록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낙수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4대 패키지를 통해서, 지역의료 또 필수의료 이 부분을 살리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희승 위원** 왜 일본의 선진 사례 이런 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일본 사례를 저희가 많이 공부를 했고요……

○**박희승 위원** 일본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는 계시지요, 9년 의무복무하고 있는 거?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자꾸 그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현재에서 결정이 났어요,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자꾸 의사들 평생 대시는데 의사들도 문재인 정부 그걸 받을 걸 이렇게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속내는.

그리고 현 정부를 지금 의심하는 게 의사를 증원해 가지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보완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의 유수한 대학병원들이 각 큰 도시에 분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위성도시에. 거기 지금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변호사들도 로스쿨 돼 가지고 많이 뽑아 놨지 않습니까? 지방에 남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방의 로스쿨에, 예전에 사법시험도 적게 붙는 대학도 막 100명, 120명까지 터오를 줬어요, 서울의 유수한 대학하고 비슷하게.

○**소위원장 김미애** 박희승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박희승 위원** 관련된 얘기 하고 있으니까 참으십시오, 좀.

○**소위원장 김미애** 6시에 아까 제가 마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는 변호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분들이 졸업하고 정부의 예측치와 달리 다 지금 수도권으로 와 있는데 수도권에서 변호사 하면서 굉장히 보수도 적고 어려운데도 지방에 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생각

했던 무변촌 이런 곳 골고루 법률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수도권 집중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변호사를 구하려면 서울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줘야 로펌에서 고용을 하거나 변호사를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도 지금 그런 전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같이 이렇게 의무복무를 해야 우리도 해결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편하게 군의관 또는 공보의, 군대 대신 복무하는 그런 의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군대를 갔으니까. 지금은 군의관으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사병으로 가겠다는데 의사가 없는 그 많은 지역에 뭘로 그걸 보충을 할 것인지. 그러면 국가에서 5억, 10억씩 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비용을 줘서 근무하게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런 농촌지역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냥 의료를 포기하고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나는 국가 정책의 기본이 지금 설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위원님 그 말씀 주신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말씀 드리고요.

다만 의대 중원도 지난 국감이나 청문회에서 질타를 하신 것이 왜 의료계랑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난리가 나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당하고 목적이 올랄라도 상대와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수용성을 갖춘 상태에서 법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논의하는 과정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대화 과정을 거쳐서 숙성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희승 위원** 차관님 말씀에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소위원장 김미애** 박희승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다른 위원들도 손을 들고 의사발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혼자 말씀하셨고 제가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에게 ‘좀 참으십시오’라고 일방 진행을 계속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까?

○**박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미애**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의료대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청문회도 했고 그리고 의료계의 반발도 지금까지 상당하고 여야의정협의체 가동했지만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반발이 큰 걸 알면서 계속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발의했고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을 포함해서 이 법안도 그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주된 비판이 왜 의료계 의견을 더 안 들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치 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이 우리 모두의 동의하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전개하는 것도 저는 좀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잘못이라고 여겼다면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청회가 됐든 청문회가 됐든 제가 야당하고 논의를 해서 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의사진행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박희승 위원** 아니, 저희가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

○**소위원장 김미애** 그건 아닌데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듣고 또 다시 기회를 제가 드리고자 함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박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예.

○**소위원장 김미애** 두 분에게는 다음에 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이상 2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미애** 예, 하십시오.

○**서미화 위원** 오늘은 이렇게 간사 간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현장에서 기다리는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법안도 협의를 못 해서 너무 유감이고요.

다음 소위 때는 의사일정에 맞춰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올라온 법안은 다 상의를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미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전문위원 그리고 양당의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

### ○출석 위원(11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박희승 백종현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한지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연광석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 박민수

연금정책관 진영주  
장애인정책국장직무대리 방석배  
노인정책관 임을기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중규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 곽순현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유미  
기획조정관 우영택  
식품안전정책국장 김성곤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강백원  
식품소비안전국장 최대원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이기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